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서비스 현황과 종단조사를 위한 워크숍

2011. 05. 25



주요일정 및 내용

- 일시 : 2011년 5월 25일(수) 15:00-18:00
- 장소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회의실

- 세부일정 [목차]
 - 15:00 - 15:10 개회 및 인사 [연구진]
 - 15:10 - 15:30 1. 201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개요 / 1 [황진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5:30 - 15:50 2. 지역아동센터 현황 / [박영숙, 지역아동정보센터중앙지원단 단장]
 - 15:50 - 16:10 3. 방과후아카데미 현황 / [전명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진흥본부장]
 - 16:10 - 16:30 4. 아동양육시설 현황 /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 16:30 - 16:50 5. 본조사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 / [신중식, 동서리서치 차장]
 - 16:50 - 17:00 휴식
 - 17:00 - 17:30 각 분야별 지정토론자 논의 [황형진, 보건복지부 사무관]
[한도희, 여성가족부 전문위원]
[김도균, 보건복지부 사무관]
 - 17:30 - 18:00 조사관련 자유토론 및 관련 논의

목 차

1. 201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1차 본조사 준비 및 실시	5	
4. 2차 본조사 준비	18	
2. 지역아동센터 현황	21	
1.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적인 운영 현황	21	
2. 신고현황	23	
3. 이용아동현황	24	
4. 운영주체	30	
5. 운영기간	31	
6. 종사자현황	32	
7. 정부보조금(국고+지방비)지원현황	40	
8. 지자체 별도(운영비 외) 지원현황	43	
9. 급식현황	44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황	45	
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개요	45	
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현황	50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유사사업 현황 비교	55	
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효과·만족도 조사 결과	59	
4. 아동양육시설 현황과 자립지원 방안	60	
1. 아동양육시설의 현황	60	
2. 아동양육시설 관련 조사연구 분석	64	
3. 향후 패널조사를 위한 제언	80	
5. 본조사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86	
1. 본 조사 추진개요	86	
2. 향후 추진일정	90	

1. 201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개요

황진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연구의 필요성

우리사회의 경제적 양극화 심화와 불안정한 가족구조로의 급속한 변화는 취약가정이나 양육시설로 대표되는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아동과 청소년을 증가시키거나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의미하는 아동가구 절대빈곤율이 2001년 5.4%, 2002년 4.4%를 유지하다가 2003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2003년 9.4%, 2004년 9.0%, 2005년 10.0%로 점차 증가한 후 2006년부터 약 8%대를 유지하고 있다. 상대빈곤율도 1991년에는 8.8%였으나 1990년대부터 증가하여 2000년대에는 10~11%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 불안정한 가족구조를 대표하는 지표인 한부모가족의 수도 2004년 전체 10만9천여가구에서 2008년 15만2천여 가구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특히 한부모 가족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의 가구수는 2008년 약 8만2천가구로 전체 한부모 가구의 55%를 차지하며, 그 세대원은 21만2천5백여명에 달한다.

또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요보호아동의 수도 2000년 총 9천여명에서 큰 변화가 없이 2009년 9천명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 중 시설보호를 받는 아동은 2000년 4천4백여명에서 2010년 4천7백여명으로 약간 증가하였고, 가정위탁의 경우 2천2백여명에서 2천7백여명으로 증가하였다.

경제적으로나 가족 구조의 측면에서 취약한 가정에서 성장하거나 시설의

보호를 받는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주변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필요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정상적인 발달과업을 달성하기 힘들어지고, 미래사회 인적자원개발 및 사회통합을 저해하여 사회적 측면에서도 막대한 비용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성장과정상의 위기와 어려움에 탄력적으로 적응해 나가며, 성인이 된 후에는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정책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10년간 관련 정책과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빈곤가족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04년 법제화에 따라 2004년 800여곳에서 2010년 12월 현재 3,662개소로 증가하였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경우도 2005년 46개소에서 2011년 200여개소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의 효과에 대한 검증과 정책대상 아동·청소년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종단조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일반계층 아동·청소년에 비해, 취약가정과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발달과업이나 기타 사회적 환경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종단조사의 경우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발달과업의 성취도와 아동·청소년의 욕구 변화 등을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취약가정과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기존 연구가 대부분 횡단적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적응 및 발달의 변화양상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나 조사가 부족한 형편이라는 점도 종단연구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0년 취약가정·시설의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단연구 I” 을 수행하여 종단조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 1,000여명을 대상으로 3년간 종단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사모형을 설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2011년 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 연구의 목적

취약한 가정이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단조사의 전체적인 배경과 목적은 [그림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양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과정에 대한 장기적 추적조사를 통해
종단적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정부지원책의 기초자료 제공**

- > 종단적 추적조사를 통한 장기적 안목의 기초자료 마련
- > 적용 및 발달의 변화양상에 대한 깊이있는 조사 필요
-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깊이있는 조사 부족



[그림 1] 종단 연구 및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

이러한 큰 맥락에서 2011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단연구Ⅱ”의 목적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 1,000명을 패널로 구축하여 1차 본조사를 실시는 것이다. 둘째, 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취약가정과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의 특징과 변화양상, 각 사업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셋째, 2012년 2차 본조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목적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가정과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 1,000명을 패널로 구축하여 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2010년 실시된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1차 본조사는 그동안 거의 실시된 바가 없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과정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조사의 시초를 제공하는 조사로써, 이들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생활의 변화와 발달 특성, 관련 지원기관의 기능과 효과 등에 대한 종단적 자료를 수집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본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조사대상 집단별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추적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그에 적절한 지원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과 양육시설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이들의 성장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아동과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수행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저소득층 가정 및 양육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종단연구를 통해 얻어진 자료와 분석결과를 통해서 저소득층 가정 및 양육시설 아동의 변화과정에 대한 탐색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2012년 2차년도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패널관리방안의 마련, 관련 조사대상 시설과의 협력체계 구축, 서비스 수혜가 중단되는 사례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3. 1차 본조사 준비 및 실시

1) 1차 연구 및 예비조사 결과검토

2010년 1차 연구의 단기적 목적은 2011년부터 최소 3년간 추진될 취약가정 및 시설의 아동·청소년 대상 종단조사를 위한 전체적인 기반 및 모형을 개발하고,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내용과 조사설계 전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종단조사의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이용자를 선정하고, 종단조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동일 집단의 횡단적 자료와 종단적 자료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3개년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1차년도의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은 [그림 2]와 같다.



또한 201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예비조사의 주요 대상은 <표 1>과 같다.

<표 1> 예비조사 표본집단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 카데미	양육시설	계
서울	65	18	54	137 (28개소)
부산	34	31	14	79 (27개소)
대구	19	29	10	58 (10개소)
광주	43	17	9	69 (12개소)
인천	34	0	8	34 (12개소)
대전	29	6	9	44 (8개소)
합계	224 (52개소)	101 (10개소)	104 (35개소)	429 (97개소)

예비조사 준비 및 진행관련 주요내용으로는, 조사 협조도를 4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높다’(높은 편+높다)는 응답이 91.8%로, 거의 모든 면접원이 기관의 협조도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조사 시간대의 경우 4시~5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답사례품의 경우 학생은 예비조사시 수면양말, 지도자에게 2만원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본조사에는 학용품 또는 상품권 선호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지 내용의 경우, 면접원이 어렵게 느끼는 항목(면접원 응답)의 경우 있다는 응답이 30%, 특히 부모 등 가정배경에 대한 항목의 조사에 어려움 호소하였고,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항목(면접원 응답)도 있다는 응답이 41.2%로 높았으며, 주로 부모와 관련 된 항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예비조사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본조사의 방법과 조사지 수정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조사대상 모집단 현황조사 및 표본추출

2010년 실시된 예비조사의 경우 패널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표본추출보다는 조사방법과 조사지 검토에 초점을 맞추었고, 표본추출을 위한 조사모

집단의 현황은 2011년 초에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2011년 7~8월 실시 예정인 1차 본조사에 앞서 3월까지 조사모집단(전국의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이용아동)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전체 표본집단(1,000명)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정부공식통계를 구축하는 기관과의 밀접한 협력관계의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표본은 1,000명을 목표로 하며, 표본 추출단위 및 추출률을 보다 명확히 설정할 계획이다.

3) 조사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2010년 예비조사의 경우 조사대상 표본추출이나 대상기관 후보선정 및 섭외 등의 과정에 있어서는 개별 시설과의 직접적인 협력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되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지역아동정보센터, 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방과후아카데미지원단, 양육시설의 경우 한국아동복지협회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전체적인 현황과 관련된 자료 수집과 분석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개별 조사대상이 되는 시설의 선정과 지원을 얻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 후보시설로 선정된 기관과 관련된 설명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3개 시설의 협력은 패널대상자 모집, 부모 동의서 작성, 패널 이탈 가능성 축소 등 이번 종단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난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전 공문 및 팸플릿 등 홍보자료 준비, 시설의 관심사를 담은 참고자료 배포, 해당지역 시설 담당공무원 접촉(사례품 제공), 시설 측의 건의사항 취합, 충분히 교육받은 조사원이 조사목적 등 설명, 아동 관심 유발 위해 다과나 조사회원증 등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계획이다. 현재 고려중인 협력체계 모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조사협력체계(안)

4) 조사지 확정

2010년 11월에 실시된 예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조사지를 확정해야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이 되는 3개 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각 시설별 특화된 설문문항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양육시설의 경우 가정환경이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항의 검토가 필요하다.

2010년 실시되는 예비조사의 조사항목은 <표 2>와 같다.

<표 2> 예비 조사시 사용한 조사지의 영역 및 내용

조사영역	조사 내용	조사항목	문항수	폐널조사	사업효과	통합조사
기본	1) 생년월일	1	○			
	2) 성별	1	○			
1. 일상생활	하루일과시간	1)-1 취침시간/기상시간	2	○		
		1)-2 방과후 학교나 교실에서 보내는 시간	1		○	
		1)-3 시설 거주 시간	1	○		
		1)-4 학원 시간	1	○		
		1)-5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	1		○	
2. 학교생활	건강 및 체격	2) 키와 몸무게	1			
		3) 아침 거르는 일자와 이유	2	○		
		4) 질병 경험, 치료여부, 이유	3	○		
		5) 건강에 대한 상대적 자기평가	1	○		
	미디어이용	6) 컴퓨터 이용여부, 시간, 장소, 목적	14	○		
		7) 휴대전화 이용여부	1	○		
		합계	30			
3. 자산 및 가족 등에 대한 인식 및 생활	학교생활 및 학습생활	1) 결석경험과 이유	6	○		
		2) 학교생활적응(학습생활, 학교규칙적응, 교우관계, 교사관계 각 3문항)	12	○		
		3) 학습습관(3문항)	3	○		
		4) 과목별 성취정도 (9개 과목)	9		○	
		합계	5			

조사영역	조사내용	조사항목	문항수	폐널조사	사업효과	통합조사
3. 자산 및 가족 등에 대한 인식 및 생활	현재 자신에 대한 인식	1) 자아탄력성 (15개 문항)	15	○		
	미래 자신에 대한 인식	2) 미래 진로의식 (4개 문항)	4		○	
	스트레스 인식	3) 스트레스 (10가지)	10			
4. 기관서비스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감독, 애정, 과잉간섭, 과잉기대, 비일관성 관련 문항 각 2개)	4)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인식(감독, 애정, 과잉간섭, 과잉기대, 비일관성 관련 문항 각 2개)	10	○		
	사회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5)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4개 문항)	4	○		
	6) 사회에 대한 인식 (4개 문항)	6) 사회에 대한 인식 (4개 문항)	4	○		
	일상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7) 일상생활 만족도(가정, 부모, 형제자매, 전강, 여가, 학교, 성적, 친구, 일상생활, 전반적 만족 등)	10		○	
	비행경험	8) 비행경험(5개 문항)-구폐널	5			
	폭력피해경험	9) 폭력피해경험과 빈도 (5개 문항)-구폐널	5			
	상위인지도	10) 상위인지도 측정항목 (9개 문항)	9			
	문제해결능력	11) 문제해결능력 측정항목 (10개 문항)	10			
	합계	합계	86			
	기관서비스 이용기간	1)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	1		○	
4. 기관서비스	각종 활동 경험여부	2) 각종 활동 경험여부 및 빈도	7		○	
	활동의 도움정도	3) 프로그램효과성에 대한 지각	6		○	
	지도자 만족도	4) 시설장, 현장지도자에 대한 만족도	5		○	
	시설만족도	5) 시설환경만족도	9		○	
	생활변화	6) 시설 이용 후 생활변화	11		○	
	합계	합계	47			

조사영역	조사내용	조사항목	문항수	패널조사	사업효과	통합조사
5. 가족관련공통배경	가족의 구조 및 경제수준	1) 부모 동거여부/조부모와의 동거여부	1			○
		2) 가정의 경제수준	1			○
	부모의 특징	3) 부모의 학력	2			○
		4) 부모의 직업 여부	2			○
	부모와 생활	5) 부모의 장애나 질병 유무	2			○
		6)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빈도	6			○
		7) 1주일 중 집에 혼자 있는지 여부 / 하루 중 혼자 있는 시간	2			○
총 문항수		201				

예비조사의 중요한 목적은 설문내용의 타당성 검증과 관련된 것으로, 질문의 형태가 정확한지, 응답자가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지와 같은 적합성의 검증에 있다. 또한 예비조사를 통하여 적정 설문시간 등에 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관련된 조사결과 대부분의 시설 이용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설문지의 분량과 문항의 난이도 등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비조사에 활용하였던 조사지의 문항 수 및 문장의 난이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조사들과의 차별성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영역 및 항목을 마련하였다. 조사항목의 경우 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에서 조사된 항목과의 연계성 및 각 사업의 효과성 검증방안을 고려하여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2010년 11월 진행한 예비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아동·청소년용 설문의 기본적인 조사영역은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일상생활, 학교생활, 자신 및 가족 등에 대한 인식과 생활, 기관에서 제공받는 서비스로 구성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내용은 2010년에 진행된 예비조사 검토의견을 반영해 기관종사자에게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응답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하였으며, 조사영역은 기본사항과 가족관련 공통배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본조사 아동·청소년용 설문문항은 <표 3>과 같다.

<표 3> 2011년 본조사용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조사항목	문항수	패널조사	사업효과	통합조사
1. 일상생활	하루일과시간	1)-1 취침시간/기상시간	2	○		
		1)-2 방과후 학교나 교실에서 보내는 시간	1		○	
		1)-3 시설 거주 시간	1	○		
		1)-4 학원 시간	1	○		
	건강 및 체격	2) 아침 거르는 일자와 이유	2	○		
		3) 질병 경험, 치료여부, 이유	3	○		
		4) 건강에 대한 상대적 자기평가	1	○		
		5) 컴퓨터 이용여부, 시간, 장소, 목적	14	○		
	미디어이용	6) 휴대전화 이용여부	1	○		
		합계	26			
	2. 학교생활 및 학습생활	1) 결석 경험과 이유	6	○		
		2) 학교 생활적응(학습생활, 학교규칙적응, 교우관계, 교사관계 각 3문항)	8	○		
		3) 과목별 성취정도 (5개 과목)	5		○	
		4) 성적에 대한 만족도	1			
		합계	20			

조사영역	조사내용	조사항목	문항수	패널조사	사업효과	통합조사
3. 자신 및 가족 등에 대한 인식 및 생활	현재 자신에 대한 인식	1) 자아탄력성	15	○		
		2) 스트레스	6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	3)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인식(감독, 애정, 과잉간섭, 과잉기대, 비일관성)	8	○		
		4)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의 빈도	6		○	
		7) 1주일 중 집에 혼자 있는 시간/하루 중 혼자 있는 시간	2		○	
		5) 사회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6	○		
		6) 사회에 대한 인식	4	○		
	일상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7) 일상생활 만족도(가정, 부모, 형제자매, 건강, 여가, 학교, 성적, 친구, 일상생활, 전반적 만족 등)	10		○	
		8) 비행경험(5개 문항)-구패널	5			
	폭력피해경험	9) 폭력피해경험과 빈도(5개 문항)-구패널	5			
		10) 상위인지도 측정항목(9개 문항)	9			
		11) 문제해결능력 측정항목(10개 문항)	10			
합계			86			
4. 기관서비스	각종 활동 경험여부	1) 각종 활동 경험여부 및 빈도	7	○		
	지도자 만족도	2) 시설장, 현장지도자에 대한 만족도	5	○		
	시설만족도	3) 시설환경만족도	4	○		
	생활변화	4) 시설 이용 후 생활변화	11	○		
	합계		27			
총 문항수			154			

(1) 일상생활

일상생활은 하루일과의 시간구성, 건강과 체격, 미디어 이용행태로 구성된다. 하루일과시간은 취침시간/기상시간, 방과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시설(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의 이용시간, 학원 이용시간을 조사한다. 건강과 체격 관련 조사의 경우 아침식사관련 항목, 질병 경험과 치료여

부,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자기평가 항목으로 구성된다. 미디어 이용과 관련해서는 컴퓨터 이용여부, 이용시간과 장소, 목적을 조사하며, 휴대전화 이용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2) 학교생활

학교생활은 학교생활 및 학습생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결석경험과 이유, 학교생활적응(학습생활, 학교규칙적응, 교유 및 교사관계), 과목별 성취도와 성적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3) 자신 및 가족 등에 대한 인식 및 생활

자신 및 가족 등에 대한 인식 및 생활은 현재 자신에 대한 인식, 스트레스 인식,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 사회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일상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비행경험, 폭력피해경험, 상위인지도,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현재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 자아탄력성으로 조사하고, 스트레스인식은 스트레스 설문을 통해 조사한다. 부모 양육태도 인식의 경우, 감독, 애정, 과잉간섭, 과잉기대, 비일관성에 대해 조사하며, 사회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은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항과 사회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항을 통해 조사한다. 일상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가정, 부모, 형제·자매, 건강, 여가, 학교, 성적, 친구, 일상생활, 전반적 만족에 대해 조사하며, 비행경험은 비행경험문항을 통해 조사하고, 폭력피해경험은 폭력피해경험과 빈도를 조사한다. 상위인지도는 상위인지도 측정항목을, 문제해결능력 또한 문제해결능력 측정항목을 통해 조사한다.

(4) 기관서비스

기관서비스는 각종 활동 경험여부 및 빈도, 지도자 만족도, 시설환경만족도, 시설이용 후 생활변화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세부내용으로는 각종 활동 경험 여부 및 빈도, PM, SM에 대한 만족도, 시설환경만족도, 시설

이용 후 생활변화에 대해 조사한다.

(5) 개인배경 관련 문항 (종사자 응답)

기본사항은 생년월일과 성별, 키와 몸무게,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관련 공통배경의 경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각종 조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항목이며, 가족의 구조 및 경제수준, 부모의 특징, 부모와의 생활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의 구조 및 경제수준은 부모와의 동거여부, 조부모와의 동거여부, 가정의 경제수준을 조사한다. 부모의 특징은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유무에 대해 조사한다. 부모와의 생활과 관련해서는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 빈도, 1주일 중 집에 혼자 있는지 여부, 하루 중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 조사한다.

<표 4> 개인배경 조사영역 및 내용 (종사자 응답)

조사영역	조사내용	조사항목	문항수	패널조사	사업효과	통합조사
1. 기본	기본문항	1) 생년월일	1	<input type="radio"/>		
		2) 성별	1	<input type="radio"/>		
		3) 키와 몸무게	1			
		4)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	1		<input type="radio"/>	
2. 가족관련공통배경	부모의 특징	5) 가정의 경제수준	1		<input type="radio"/>	
		6) 부모 동거여부/조부모와의 동거여부	1		<input type="radio"/>	
		7) 부모의 학력	2		<input type="radio"/>	
		8) 부모의 직업 유무	2		<input type="radio"/>	
3. 부모와 생활		9)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빈도	6		<input type="radio"/>	
		10) 1주일 중 집에 혼자 있는지 여부 / 하루 중 혼자 있는 시간	2		<input type="radio"/>	
		합계	18			

5) CAPI 조사방법 준비 등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2010년 실시한 예비조사가 전형적인 PAPI방식을 활용한 반면에 2011년 실시할 본조사는 CAPI방식을 도입할 예정인데, 이 경우 프로그래밍 및 프로그램 테스트,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조사환경의 변화 등으로 조사준비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또한 CAPI용으로 전환된 질문지는 별도의 예비조사를 거쳐서 실제로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조사지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CAPI 조사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조사요원에 대한 교육이나 국가승인통계관련 작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요원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면접조사 2년 이상 경력자, 면접원 등급 B등급 이상 획득자, 패널조사 경험자, 사회적 약자 대상 용역 경험자 등을

우선 선발할 필요가 있고, 10% 정도의 대체 면접원을 사전에 확보할 예정이다.

6) 1차 본조사 실시

1차 본조사는 2011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진행할 예정이며, 실사를 마치면 엄밀한 검수과정을 거쳐 원자료파일을 구축한다. 2010년 실시한 예비조사와 2011년 실시할 1차 본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5>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개요

구 분	예비조사	본조사
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모집단 : 2011년 현재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아동 및 양육시설 거주 아동 중 초등학교4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 2010년 6월 - 방과후아카데미 2010년 10월 - 양육시설 2010년 1월 현재 이용 중인 초등4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 2010년 12월 - 방과후아카데미 2010년 12월 - 양육시설 2010년 12월 현재 이용 중인 초등3학년
표본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아동센터 200, 방과후아카데미 100, 양육시설 100표본을 임의할당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6 대도시의 시설별 초등4학년 분포를 고려하여 비례배분 해당 지역에서 무작위로 시설 추출 후 차상위 이하 가구에 속하는 초등4학년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아동센터 500, 방과후아카데미 300, 양육시설 200표본을 임의할당 시설별 전국 16개 시도의 초등4학년 분포를 고려하여 지역별 배분법 결정 해당 지역에서 무작위로 시설을 추출한 뒤, 조사대상 초등4학년 추출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PAPI (Paper and Pencil Interview) 	<ul style="list-style-type: none"> CAPI (Computer aided Personal Interview)
조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0년 1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 7-8월

7) 1차 본조사 결과 분석

또한 수정된 최종 데이터를 기초로 각 시설 유형별 패널의 일상생활이나 의식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일반 아동·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 함의와 효과성을 검토한다.

4. 2차 본조사 준비

1) 패널 관리

취약가정·시설 아동·청소년 종단조사의 패널은 최소 3년에 걸쳐 추적 조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가급적 1차 본조사의 표본으로 선정된 패널이 지속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즉, 1차 본조사 종료 시점부터 차기조사 개시시점까지 패널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종단조사의 경우 매 주기별로 이탈되는 패널이 발생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조사결과의 타당성이 낮아지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유실률을 낮추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의 패널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특히 취약가정·시설 아동·청소년 종단조사의 패널로 참여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가정과 사회적 환경은 일반 계층과 달리 불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실률 또한 높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물질적 유인과 더불어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교류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물질적 유인책으로는 생일카드와 취향을 고려한 선물을 제공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정서적인 교류의 강화를 위해서는 패널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이해할 수 있는 청소년패널 확인증의 제작, 온라인패널소식지 제작/발송, 이메일이나 휴대폰을 활용하는 등의 수단

을 통해 이탈, 이상상황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2) 2차 본조사용 조사지 및 조사방법 검토

2012년 실시할 2차 본조사의 경우, 각 시설별로 조사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이탈한 패널과 별도로 시설에서의 서비스를 더 이상 받지 않는 패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조사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층조사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심층조사의 내용은 일반적인 질문지의 주요 내용을 유지하되, 시설의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 이유, 생활시간의 변화와 관련된 사항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관련 서비스의 효과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조사수행업체 선정

예비조사 및 1차 조사의 경우, (주)동서리서치에서 조사수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2년 실시할 2차 본조사를 수행할 조사실행업체를 선정하는 작업을 6월부터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수행업체는 패널의 관리와 조사원 관리를 통해 차질 없이 조사를 진행시키고 CAPI 방식을 이용한 조사경험을 지닌 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2012년 실시되는 2차 조사에서 심층면접조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사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사항도 검토해야 한다.

○ 2011년 본조사 실시 관련 사항

- 조사대상자가 설문내용에 대해 응답할 수 있도록 일정한 경과기간이 필요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1월부터 신규 4학년 모집하고 2월부터 4

학년반 신규로 확정, 운영을 개시함.

- 시설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기간이 매우 짧아서 생활의 변화 등에 대한 검증을 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CAPI조사의 적용
- 국내 공공기관의 주요패널조사의 경우, 조사결과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대부분 CAPI조사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 추세
- 본조사에 CAPI조사를 도입할 경우, 프로그램 작성 등 개발시간에 일정한 기간 소요

2. 지역아동센터 현황

박영숙(지역아동정보센터, 센터장)

1.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적인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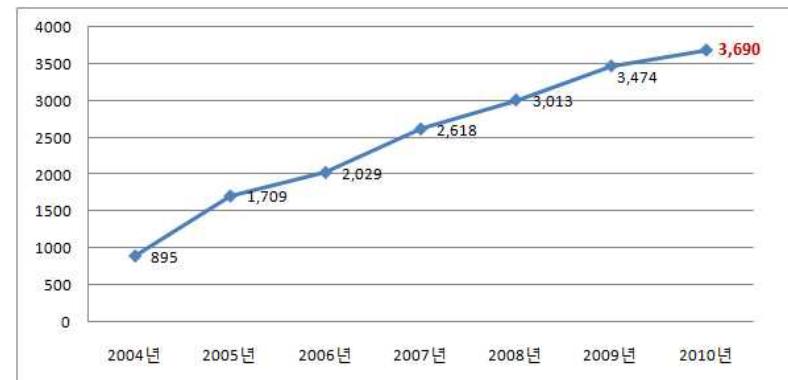
<표 1> 시도별 시설현황

(단위 : 개소)

지역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895	1,709	2,029	2,618	3,013	3,474	3,690
서울	104	157	210	262	302	354	367
부산	43	95	110	134	155	171	185
대구	21	28	35	60	75	115	147
인천	58	105	117	143	157	175	174
광주	39	80	92	143	164	201	218
대전	24	62	83	122	133	139	144
울산	17	33	41	49	51	54	52
경기	192	336	402	534	601	656	679
강원	41	94	102	114	139	159	159
충북	56	102	118	137	156	176	185
충남	39	79	87	125	151	181	200
전북	59	130	147	173	212	255	267
전남	87	182	216	279	307	343	368
경북	34	91	108	143	164	206	232
경남	66	106	128	158	189	219	244
제주	15	29	33	42	57	70	69

- 2009년 3,474개소였던 지역아동센터가 2010년 12월 기준 현재 3,690개소로 216개소(6.2%)증가함.

[그림 1]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그림 2]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2. 신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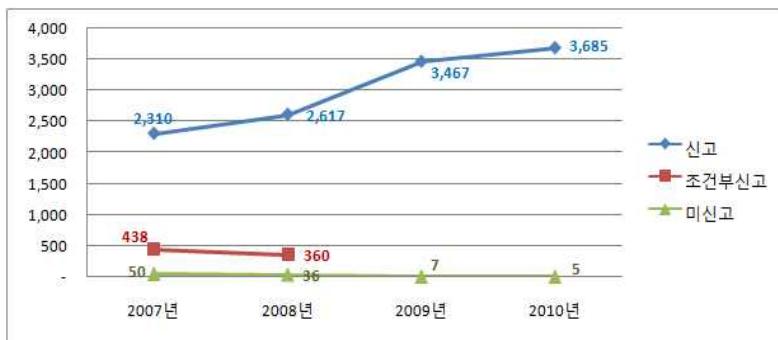
<표 2> 지역아동센터 신고현황

구분	(단위 : 개소,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2,618(100.0)	3,013(100.0)	3,474(100.0)	3,690(100.0)
신고	2,130(81.4)	2,617(86.9)	3,467(99.8)	3,685(99.8)
조건부신고	438(16.7)	360(11.9)	-	-
미신고	50(1.9)	36(1.2)	7(0.2)	5(0.2)

* 조건부신고 : 2005년 12월 31일 이전 개소된 시설에 한해서만 종사자자격을 2009년 7월 29 일까지 유예시킴

* 미신고 : 기지원시설 중 미신고로 파악된 시설

[그림 3]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신고현황



○ 지역아동센터를 신고한 경우는 2009년 3,467개소에서 2010년 3,685개소로 2009년보다 218개소(6.3%) 증가함. 미신고는 7개소에서 5개소로 2009년보다 2개소 감소함.

3. 이용이동현황

<표 3> 지역아동센터 이용이동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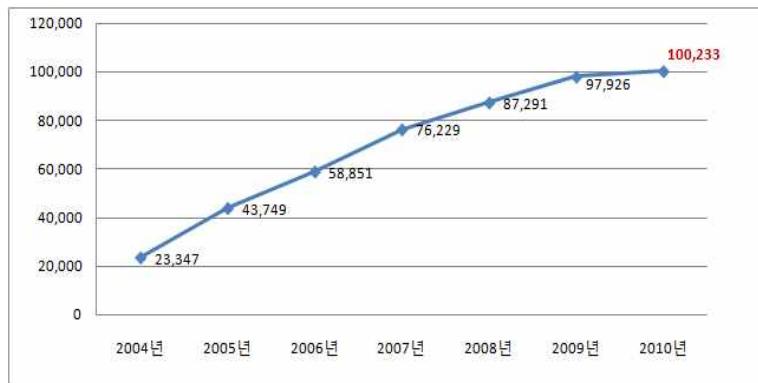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23,347	43,749	58,851	76,229	87,291	97,926	100,233
미취학	소계	1,564	3,023	4,133	4,127	4,585	4,838	4,376
	남				2,204	2,391	2,448	2,259
	여				1,923	2,194	2,390	2,117
초등학생	소계	18,348	34,617	25,149	32,867	35,972	39,053	37,865
	남				16,524	17,871	19,628	19,180
	1학년				6,668			
	2학년				5,907			
	3학년				6,605			
	여				6,162			
	1학년				5,868			
	2학년				6,655			
	3학년				28,177	33,163	38,032	40,233
	소계				13,785	16,230	18,733	20,072
	남				6,308			
중학생	4학년	21,426	28,177	33,163	8,394			
	5학년				5,370			
	6학년				8,512			
	여				6,401			
	4학년				5,248			
	5학년				9,224	11,380	13,600	15,075
	6학년				4,796	5,721	6,780	7,567
	소계				4,428	5,659	6,820	7,508
	남				3,755			
	1학년				2,248			
	2학년				1,564			
고등학생	3학년	555	2,880	5,129	3,793			
	1학년				2,227			
	2학년				1,488			
	3학년				1,413	1,862	2,072	2,346
	소계				788	988	1,093	1,242
	남				689			
	1학년				370			
	2학년				183			
	3학년				622			
	여				333			
	1학년				149			
탈학교	소계	-	-	103	104	133	331	338
	남				71	76	177	187
	여				33	57	154	151
기타	소계	-	22	99	317	196	-	-
	남				244	120	-	-
	여				73	7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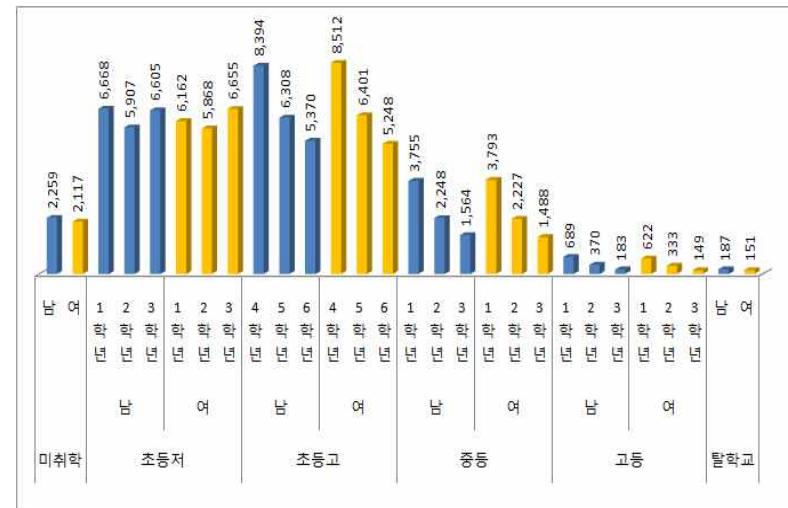
* 2004년 탈학교/기타, 2005년 탈학교, 2009년부터 기타는 별도 조사되지 않음.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수는 2009년 97,926명에서 2010년 100,233명으로 2009년에 비해 2,307명(2.4%) 증가함.
- 미취학아동의 경우, 2009년 4,838명에서 2010년 4,376명으로 2009년에 비해 462(9.5%) 감소함.
- 초등학생의 경우, 2009년 77,085명에서 2010년 78,098명으로 1,013명(1.3%) 증가함. 이중 초등학교 저학년은 2009년에 비해 1,188명(3.0%) 감소하였고, 초등학교 고학년은 2,201명(5.8%) 증가함.
- 중학생의 경우, 이용아동수가 2009년 13,600명에서 2010년 12월 말 현재 15,075명으로 1,475명(10.8%) 증가함.
- 고등학생의 경우, 2009년 2,072명에서 2010년 2,346명으로 2009년에 비해 274명(13.2%) 증가함.
- 학년별로 비교하였을 때, 남녀아동 모두 초등학교 4학년인 경우가 각각 8,394명, 8,51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현황



[그림 5] 학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현황



1) 특별관리 아동현황

<표 4> 특별관리아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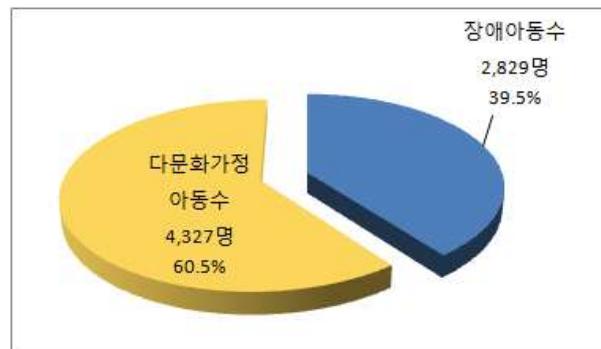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아동수	비율	아동수	비율	아동수	비율
합계	3,290	100.0	5,816	100.0	7,156	100.0
장애인아동수	1,519	46.2	2,534	43.6	2,829	39.5
다문화가정아동수	1,771	53.8	3,282	56.4	4,327	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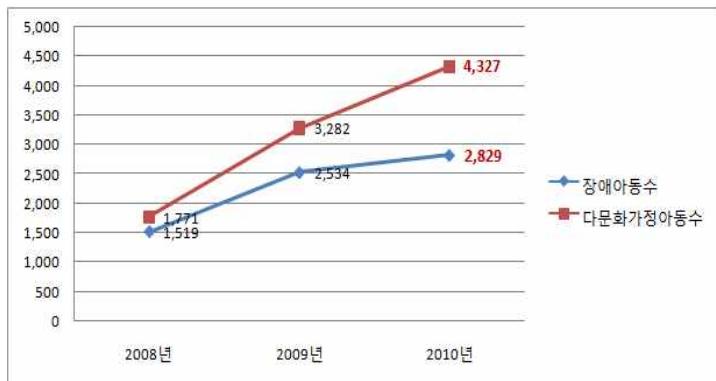
- 장애아동은 2009년 2,534명에서 2010년 2,829명으로 295명(11.6%)증가함. 다문화가정아동은 2009년 3,282명에서 2010년 4,327명으로 1,045명(31.8%) 증가함.

2) 경제적 상황별 아동현황

[그림 6] 특별관리 아동현황



[그림 7] 연도별 특별관리 아동현황



<표 5> 지역아동센터 경제적 상황별 아동현황

(단위 :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아동수	센터당 평균 아동수	아동수	센터당 평균 아동수	아동수	센터당 평균 아동수	아동수	센터당 평균 아동수
합계	76,229 (100.0)	29.1	87,291 (100.0)	29.0	97,926 (100.0)	28.2	100,233 (100.0)	27.2
수급권 아동	21,704 (28.5)	8.3	27,698 (31.7)	9.2	27,191 (27.8)	7.8	26,657 (26.6)	7.2
차상위 아동	30,785 (40.3)	11.8	26,797 (30.7)	8.9	31,792 (32.5)	9.2	37,801 (37.7)	10.2
학교중 식 지원아 동	10,191 (13.4)	3.9	14,461 (16.6)	4.8	-	-	-	-
기타승 인 아동	-	-	-	-	17,526 (17.9)	5.0	21,942 (21.9)	6.0
일반아 동	13,549 (17.8)	5.2	18,335 (21.0)	6.1	21,417 (21.8)	6.2	13,833 (13.8)	3.8

※ 차상위아동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의 아동을 말함

※ 학교중식지원아동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아동을 제외하고 건강보험료 2만9천원이하인 가구의 아동을 말함(교육인적자원부 자료)

※ 기타승인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아동과 차상위 인정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 아동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신빈곤층 아동을 말하며 공신력있는 기관 및 담당자의 추천서를 통해 해당 아동으로 인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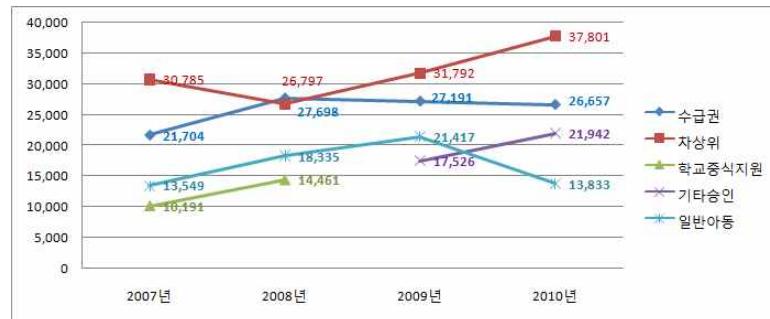
※ 2009년부터 학교중식지원아동이 아닌 기타승인아동으로 조사됨

○ 이용아동 중 차상위(저소득)아동이 37.7%(35,780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급권 아동이 26.6%(26,657명), 기타승인아동 21.9%(21,942명), 일반아동이 13.8%(13,833명)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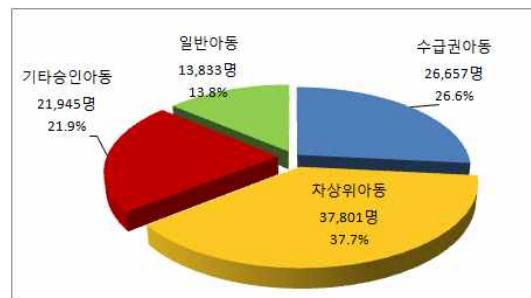
○ 한 센터당 평균아동수는 27.2명으로, 이 중 수급권아동은 7.2명, 차상위(저소득)아동은 10.2명, 기타승인아동 6명, 일반아동 3.8명으로 조사됨.

○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한 센터당 평균 이용아동수는 29.1명에서 27.2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

[그림 8] 연도별-경제적 상황별 이용아동현황



[그림 9] 경제적 상황별 이용아동현황



4. 운영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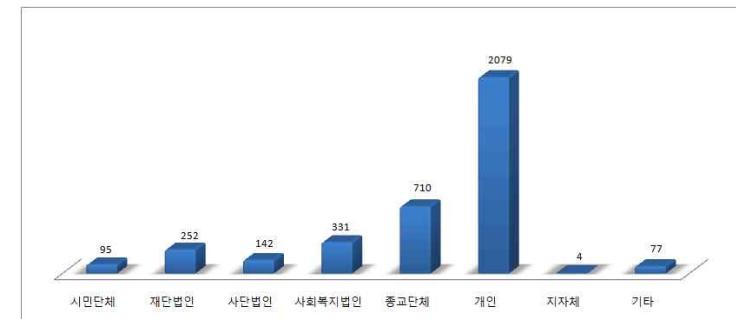
<표 6>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단위 : 개소,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1,709	2,029	2,618	3,013(100.0)	3,474(100.0)	3,690(100.0)
시민단체	139	66	80	97(3.2)	92(2.6)	95(2.6)
재단법인	117	144	146	180(6.0)	235(6.8)	252(6.8)
사단법인	61	89	111	123(4.1)	148(4.3)	142(3.8)
사회복지법인	170	245	267	302(10.0)	324(9.3)	331(9.0)
종교단체	618	757	861	902(29.9)	737(21.2)	710(19.2)
개인	559	660	1,085	1,322(43.9)	1,873(53.9)	2,079(56.4)
지자체	4	5	4	6(0.2)	4(0.1)	4(0.1)
기타	41	63	64	81(2.7)	61(1.8)	77(2.1)

* 기타 : 의료법인, 학교법인, 아파트운영회 등

[그림 10] 운영주체별 지역아동센터 수



○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주체가 개인인 경우, 전체의 56.4%(2,079개소)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종교단체가 19.2%(710개소), 사회복지법인이 9.0%(331개소), 재단법인이 6.8%(252개소), 사단법인이 3.8%(142개소)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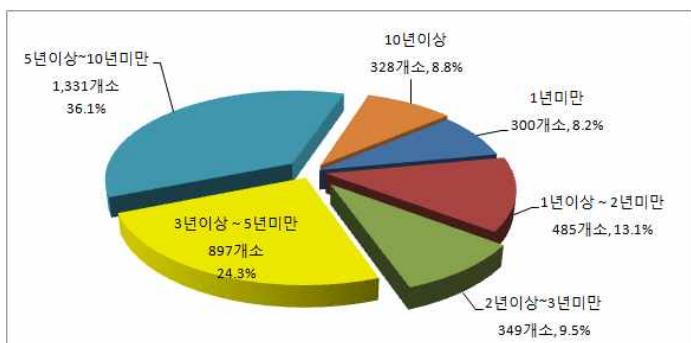
5. 운영기간

<표 7> 지역아동센터 운영기간

(단위 : 개소, %)

구분	기관	비율
합계	3,690	100.0
1년 미만	300	8.2
1년 이상 ~ 2년 미만	485	13.1
2년 이상 ~ 3년 미만	349	9.5
3년 이상 ~ 5년 미만	897	24.3
5년 이상 ~ 10년 미만	1,331	36.1
10년 이상	328	8.8

[그림 11] 지역아동센터 운영기간



○ 운영기간이 5년 이상~10년 미만이 36.1%(1,331개소), 3년 이상~5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24.3%(897개소), 1년 이상~2년 미만이 13.1%(485개소) 순으로 나타남.

6. 종사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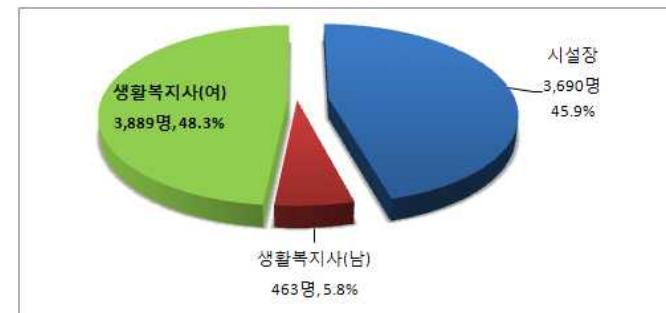
<표 8> 종사자현황

(단위 : 명, %)

종사자 총인원	시설장			생활복지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8,042 (100.0)	3,690 (100.0)	1,253 (34.0)	2,437 (66.0)	4,352 (100.0)	463 (10.6)	3,889 (89.4)

※ 시설장과 생활복지사의 성별 비율은 각각의 소계를 100.0%로 하여 산출하였음.

[그림 1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현황



○ 지역아동센터 총 종사자수는 8,042명이고, 이 중 시설장은 개소당 1명인 3,690명(45.9%)이고 생활복지사는 4,352명(54.1%)로 나타남.

○ 시설장 3,690명 중 남자는 1,253명(34.0%), 여자는 2,437명(66.0%)로 나타났고, 전체 생활복지사 4,352명 중 남자는 463명(10.6%), 여자는 3,889명(89.4%)로 조사됨.

1) 신고정원수 대비 종사자 배치현황

<표 9> 신고정원수 대비 종사자 배치현황

(단위 : 개소, %)

신고정원수	종사자수	센터수	전체 센터수 대비 비율
전체		3,690	100.0
10인 미만	시설장	173	4.7
	생활복지사	없음 160(92.5) 1인 13(7.5)	4.3 0.4
	소계	173(100.0)	4.7
10인 이상 ~30인 미만	시설장	2,817	76.2
	생활복지사	없음 43(1.5) 1인 2,640(93.7) 2인 123(4.4) 3인 11(0.4)	1.2 71.4 3.3 0.3
	소계	2,817(100.0)	76.2
30인 이상 ~50인 미만	시설장	694	18.8
	생활복지사	없음 1(0.1) 1인 32(4.6) 2인 617(88.9) 3인 40(5.8) 4인 4(0.6)	0.1 0.9 16.6 1.1 0.1
	소계	694(100.0)	18.8
50인 이상	시설장	6	0.3
	생활복지사	2인 2(33.3) 3인 2(33.3) 4인 2(33.3)	0.1 0.1 0.1
	소계	6(100.0)	0.3

○ 신고정원수 10인 미만 시설은 총 173개소로, 이 중 생활복지사가 없는 경우는 160개소(92.5%)이고, 생활복지사가 1인인 경우는 13개소(7.5%)로 나타남.

○ 신고정원수 대비 법정종사자 기준 미달 센터를 살펴보면, 신고정원수 10인 이상~30인 미만 시설은 생활복지사가 없는 43개소(1.5%), 30인 이상~50인 미만 시설은 생활복지사가 1인 이하인 33개소(1.0%), 50인 이상의 시설의 경우는 생활복지사가 2인 이하인 2개소(0.1%)로, 전체 3,690개소 중 총 78개소, 2.6%가 신고정원수 대비 법정종사자 기준이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이용아동수 대비 종사자 배치현황

○ 이용아동수 10인 미만의 시설은 총 177개소로, 이 중 생활복지사가 없는 경우는 140개소(79.1%)이고, 생활복지사가 1인인 경우는 36개소(20.2%)로 나타남.

○ 이용아동수 대비 법정종사자 기준 미달 센터를 살펴보면, 신고정원수 10인 이상~30인 미만 시설의 경우, 생활복지사가 없는 60개소(1.6%), 30인 이상~50인 미만 시설의 경우는 생활복지사가 1인 이하인 186개소(5.0%), 50인 이상의 시설의 경우, 생활복지사가 2인 이하인 23개소(0.7%)로, 전체 3,691개소 중 총 269개소, 7.3%가 이용아동수 대비 법정종사자수 기준 미달로 나타남.

<표 10> 이용아동수 대비 종사자 배치현황

(단위 : 개소, %)

이용 아동수	종사자수	센터수	전체 센터수 대비 비율
	전체	3,690	100.0
10인 미만	시설장	177	4.9
	생활복지사	없음 140(79.1)	3.8
		1인 36(20.3)	1.0
		2인 1(0.6)	0.1
	소계	177(100.0)	4.9
10인 이상 ~30인 미만	시설장	2,653	71.7
	생활복지사	없음 60(2.2)	1.6
		1인 2,466(93.0)	66.7
		2인 116(4.4)	3.1
		3인 11(0.4)	0.3
	소계	2,653(100.0)	71.7
30인 이상 ~50인 미만	시설장	829	22.4
	생활복지사	없음 4(0.5)	0.1
		1인 182(22.0)	4.9
		2인 603(72.7)	16.3
		3인 36(4.3)	1.0
		4인 4(0.5)	0.1
	소계	829(100.0)	22.4
50인 이상	시설장	31	1.0
	생활복지사	1인 1(3.2)	0.1
		2인 22(71.0)	0.6
		3인 6(19.4)	0.2
		4인 2(6.5)	0.1
	소계	31(100.0)	1.0

3) 지역별 종사자현황

<표 11> 지역별 종사자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종사자		시설장		생활복지사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소계		남		여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8,042	100.0	3,690	100.0	4352	100.0	463	100.0	3,889	100.0
서울	834	10.4	367	9.9	467	10.7	60	13.0	407	10.5
부산	398	4.9	185	5.0	213	4.9	13	2.8	200	5.1
대구	297	3.7	147	4.0	150	3.4	12	2.6	138	3.5
인천	380	4.7	174	4.7	206	4.7	20	4.3	186	4.8
광주	500	6.2	218	5.9	282	6.5	22	4.8	260	6.7
대전	336	4.2	144	3.9	192	4.4	22	4.8	170	4.4
울산	107	1.3	52	1.4	55	1.3	3	0.6	52	1.3
경기	1,551	19.5	679	18.5	872	19.9	92	19.7	780	20.1
강원	337	4.2	159	4.3	178	4.1	8	1.7	170	4.4
충북	390	4.8	185	5.0	205	4.7	30	6.5	175	4.5
충남	438	5.4	200	5.4	238	5.5	31	6.7	207	5.3
전북	557	6.9	267	7.2	290	6.7	41	8.9	249	6.4
전남	780	9.7	368	10.0	412	9.5	47	10.2	365	9.4
경북	491	6.1	232	6.3	259	6.0	25	5.4	234	6.0
경남	500	6.2	244	6.6	256	5.9	29	6.3	227	5.8
제주	146	1.8	69	1.9	77	1.8	8	1.7	69	1.8

○ 시설장은 경기 679명(18.5%), 전남 368명(10.0%), 서울 367명(9.9%) 순으로 나타났고 생활복지사의 경우는 남자는 경기 92명(19.7%), 서울 60명(13.0%), 전남 47명(10.2%)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경기 780명(20.1%), 서울 407명(10.5%), 전남 365명(9.4%) 순으로 나타남.

4) 시설장 자격증 보유현황

<표 12> 시설장 자격증 보유종류

(단위 : 명, %, 중복응답)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합계	3,370	100.0	4,893	100.0	5,372	100.0
사회복지사	2,712	80.5	3,345	68.4	3,583	66.7
보육교사	253	7.5	835	17.1	962	17.9
정교사	142	4.2	307	6.3	333	6.2
영양사	112	3.3	160	3.2	165	3.1
기타	151	4.5	246	5.0	329	6.1

- 시설장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3,583명(66.7%)로 가장 많았고, 보육교사 자격증 962명(17.9%), 정교사 자격증 333명(6.2%)으로 나타남.

<표 13> 시설장 자격증 보유개수

(단위 : 명,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합계	3,013	100.0	3,474	100.0	3,690	100.0
1개	2,692	89.3	2,311	66.5	2,345	63.6
2개	287	9.5	926	26.7	1,038	28.1
3개	32	1.1	218	6.3	278	7.5
4개 이상	3	0.1	19	0.5	29	0.8

- 시설장 중 자격증을 1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2,345명(63.6%)로 가장 많았고 2개를 보유한 경우도 1,038명(28.1%)로 나타남.

5) 생활복지사 자격증 보유현황 및 자격증 보유개수

<표 14> 생활복지사 자격증 보유종류

(단위 : 명, %, 중복응답)

구 分	2008년		2009년		2010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합계	5,545	100.0	6,111	100.0	6,547	100.0
사회복지사	2,901	52.3	3,221	52.7	3,524	53.8
보육교사	1,102	19.9	1,295	21.2	1,445	22.1
정교사	821	14.8	875	14.3	833	12.7
영양사	29	0.5	39	0.6	34	0.5
기타	692	12.5	681	11.2	711	10.9

※ 생활복지사는 한 센터당 3명까지 조사됨

- 생활복지사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3,524명(53.8%)로 가장 많았고, 보육교사 자격증 1,445명(22.1%), 정교사 자격증 833명(12.7%)으로 나타남.

<표 15> 생활복지사 자격증 보유개수

(단위 : 명, %)

구 分	2008년		2009년		2010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합계	4,097	100.0	4,301	100.0	4,345	100.0
1개	2,871	70.1	2,784	64.7	2,542	58.5
2개	1,015	24.8	1,237	28.8	1,435	33.0
3개	200	4.9	267	6.2	343	7.9
4개 이상	11	0.2	13	0.3	26	0.6

※ 생활복지사는 한 센터당 3명까지 조사됨

- 생활복지사 중 자격증을 1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2,542명(58.5%)로 가장 많았고 2개를 보유한 경우도 1,435명(33.0%)로 나타남.

6) 종사자 급여현황

<표 16>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급여현황

(단위 : 명, 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시설장	생활복지사	시설장	생활복지사	시설장	생활복지사	시설장	생활복지사
급여를 받는 인원수	1,394	2,387	1,531	3,060	2,471	4,090	3,045	4,329
월평균 급여	826,486	843,366	857,402	855,757	884,819	899,351	903,039	953,638

* 생활복지사는 한 센터당 3명까지 조사됨

* 급여를 받는 종사자에 대해 월평균급여를 산정

- 급여를 받는 인원수는 시설장이 3,045명, 생활복지사가 4,328명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급여는 시설장이 903,039원, 생활복지사가 953,653원으로 나타남.

7. 정부보조금(국고+지방비)지원현황

1) 정부보조금(국고+지방비)지원여부

<표 17> 정부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895	1,709	2,029	2,618	3,013	3,474	3,690
정부 지원받음	454	789	881	1,859	2,619	2,859	3,103
정부 미지원	441	920	1,148	759	394	615	587

-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는 2009년 2,859개소에서 2010년 현재 3,103개소로 244개소 증가함.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센터는 2009년 615개소에서 587개소로 28개소 감소함.

<표 18> 정부보조금 지원기간

(단위 : 개소, %)

구분	전체	12개월 미만	12개월
개소	3,103	68	3,035
비율	100.0	2.2	97.8

- 2010년 말 현재 12개월동안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센터는 3,035개소(97.8%)로 나타남

2) 지역별 정부보조금(국고+지방비)지원 현황

<표 19> 지역별 정부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정부보조금(국고+지방비)지원		정부보조금(국고+지방비) 미지원	
	기관	비율	기관	비율
전체	3,103	100.0	587	100.0
서울	297	9.6	70	11.9
부산	160	5.2	25	4.3
대구	85	2.7	62	10.6
인천	153	4.9	21	3.6
광주	179	5.8	39	6.6
대전	133	4.3	11	1.9
울산	49	1.6	3	0.5
경기	602	19.3	77	13.1
강원	145	4.7	14	2.4
충북	163	5.3	22	3.7
충남	179	5.8	21	3.6
전북	220	7.1	47	8.0
전남	323	10.3	45	7.7
경북	170	5.5	62	10.6
경남	188	6.1	56	9.5
제주	57	1.8	12	2.0

○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센터는 경기 602개소(19.3%)이고, 전남 323 개소(10.3%), 서울 297개소(9.6%), 전북 220개소(7.1%)순으로 나타남.

○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센터는 경기 77개소(13.3%), 서울 70 개소(11.9%), 대구와 경북이 62개소(10.6%)순으로 나타남.

3) 지역별 평균 정부보조금(국고+지방비)지원금 현황

<표 20> 지역별 평균 정부지원금 현황

(단위 : 개소, 원)

구분	1개소 당 평균 정부보조금(국고+지방비)지원금				
	1년 평균 정부지원금		1년 미만 평균 정부지원금		
	센터수	1년 평균	1개월 평균	센터수	1개월 평균
합계	3,035	37,671,496	3,139,291	68	2,648,833
서울	288	38,863,882	3,238,657	9	3,028,869
부산	160	36,098,702	3,008,225	0	-
대구	85	38,088,827	3,174,069	0	-
인천	148	38,312,440	3,192,703	5	4,341,333
광주	175	37,115,952	3,092,996	4	2,766,311
대전	128	39,950,469	3,329,206	5	2,428,000
울산	49	37,423,416	3,118,618	0	-
경기	593	38,618,267	3,218,189	9	2,036,241
강원	141	38,526,167	3,210,514	4	2,250,000
충북	155	37,708,585	3,142,382	8	1,703,535
충남	178	35,992,432	2,999,369	1	2,520,000
전북	214	36,627,710	3,052,309	6	2,698,046
전남	312	36,469,982	3,039,165	11	3,055,674
경북	166	37,451,228	3,120,936	4	2,606,773
경남	187	36,898,447	3,074,871	1	2,100,000
제주	56	37,423,692	3,118,641	1	2,146,667

○ 지역아동센터에서 1년간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은 개소당 평균 37,671,496원이고, 1개월 평균 3,139,291원으로 나타남.

8. 지자체 별도(운영비 외) 지원현황

1) 지자체 별도(운영비 외) 지원여부 및 지원금 현황

<표 21> 지자체 별도 지원여부

(단위 : 개소, %)

구분	기관수	비율
합계	3,690	100.0
지원	1,472	39.9
미지원	2,218	60.1

<표 22> 지역별 지자체 별도지원금 현황

(단위 : 개소, 원)

구분	기관수	평균 지자체 별도지원금	1개월 평균 지자체 별도지원금
전체	1,472	4,204,523	350,377
서울	159	3,515,523	292,960
부산	3	6,773,833	564,486
대구	13	2,971,077	247,590
인천	150	5,086,331	423,861
광주	7	4,808,606	400,717
대전	108	3,655,958	304,663
울산	49	1,193,878	99,490
경기	240	5,199,932	433,328
강원	84	4,721,930	393,494
충북	48	2,792,167	232,681
충남	159	2,946,144	245,512
전북	228	5,037,273	419,773
전남	79	5,637,890	469,824
경북	8	4,846,770	403,898
경남	74	1,948,378	162,365
제주	63	4,718,397	393,200

○ 지자체 별도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전체의 39.9%(1,472개소)에 불과하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60.1%(2,219개소)로 나타남. 지자체 별도지원금은 평균 4,204,523원으로 나타났으며, 1개월 평균주정치는 350,377원으로 나타남.

9. 급식현황

<표 23> 지역아동센터 급식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급식실시여부		급식비지원여부		급식인원	
	실시	미실시	지원	미지원	급식실시인원	급식지원인원
기관	3,590	100	3,352	238	94,311	81,555

※ 급식실시 = 학기중만실시 + 방학중만실시 + 학기방학모두실시

※ 급식비지원 = 학기중만지원 + 방학중만지원 + 학기방학모두지원

※ 급식실시인원 산출시 학기방학모두실시하는 인원 중 중복된 인원은 제외함

※ 급식지원인원 산출시 학기방학모두지원받는 인원 중 중복된 인원은 제외함

○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센터는 총 3,590개소(97.3%)이고 그중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센터는 3,352개소, 급식실시인원은 94,311명, 급식지원인원은 81,555명으로 나타남.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황

전명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진흥본부장]

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개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오늘의 주인공이자 내일의 희망”인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공적 서비스 확대”를 라는 정책비전에 따라 첫째, 중앙·지방 및 학교와 가정·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공교육을 보완하는 방과후 활동을 통한 공적 서비스 기능 강화, 둘째, 맞벌이·한부모·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지도를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교육·문화적 격차 보완, 학습능력 향상 도모, 진취적 기상 함양 등)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 여성의 경제참여 촉진, 청소년의 범죄·비행 노출 예방 등의 효과 유발을 기대하며, 셋째, 주 5일 수업 시행에 따른 다양한 복지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계층간 격차 완화 및 사회통합을 실현한다는 목표에 시작되었다.

이러한 정책비전 및 목표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청소년정책이 정책의 실수요자인 청소년과 그 가족의 실생활상의 필요에 부응하기 정책 전환의 대표적인 사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다음과 같은 추진전략을 통해 시작되었다. 첫째, 시범 운영 후, 결과 평가 및 모델 유형 보완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둘째,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 관련 기능과의 연계를 통하여 운영 활성화를 꾀한다. 셋째, 지역협의체 구축·운영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진전략의 주요 실천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책임을 학교와 가정에만 일임하던 것을 일정 부분 지역사회에서 분담하도록 전환한다. 그리고 청소년 시설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 활용을 통하여 통합적인 청소년 지원체계가 구축되도록 한다.

둘째, 가정·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 신뢰 및 연계가 복원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부모의 입장에서 “양질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라는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공교육과 방과후 아카데미와의 상호연계를 꾀한다. 그리고 청소년시설을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필수시설로서 재구조화하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상시적인 운영 지원 및 점검과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셋째, 청소년의 요구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미래지향적 성장발달에 부합하고, 청소년·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과 질이 담보되는 과정을 개설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하고 우수한 활동 공간 확보이다. 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 시설(공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한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역아동센터와 다르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과후아카데미 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실제 방과후아카데미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 방과후아카데미 시설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교 실	교실은 집과 같이 안락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1개 교실 당 청소년 20명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기본형 아카데미에 있어서 2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함. 교실 공간 조성 시 지하층은 배제하고, 환기가 원활한 교실이어야 하며, 밝기는 건축법 교실 기준조명을 따라야 하고, 바닥은 가급적 온돌마루로 시공하여야 함.	
지도자실	지도자실은 지도자 사무 및 연구 공간, 회의 및 상담 공간, 기자재 보관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함.	
북카페 및 휴게실	청소년들이 편하게 쉬면서 도서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함.	
전문체험 활동실	동적인 활동(스포츠, 댄스, 무술 등), 음악활동, 미술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전문 활동실을 별도 마련하여야 함. 없을 시에는 기존공간을 활용한 대안마련이 필요함	
기타 공간	아카데미 인원수를 고려한 남녀구분 화장실과 급•배식 실시 공간 등이 조성되어야 함.	

둘째, 다양한 활동지원을 통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이다. 주중 편성 시간을 준수하여 과정별 프로그램 운영(주중 25~30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별 프로그램 운영시간 중 급식시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2~3시간은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욕구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추후 평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전문체험활동을 통해 배웠던 활동들을 추후 동아리활동으로 연계해서 운영하여,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하고 있다.

각 활동구분별 세부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활동구분별 세부내용

구 分	내 용	비 고
전문체험 활동 과정	예술체험활동, 과학체험활동, 직업개발활동, 봉사활동, 리더십 개발활동 등 강습형태가 아닌 체험활동 위주로 청소년들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주 8시간 (주말격주 4시간추가운영)
자율체험 활동과정 (제량활동)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활동(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등), 체험활동의 성격으로 담당 실무자들이 직접 운영(지역사회 연계하여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하는 등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주 2시간
학습지원 활동과정 (기본공통 과정)	보충학습지원과정 (자기주도학습) 교과학습과정 (주요교과목지원)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숙제, 보충학습지도, 독서지도 등의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 전문 강사진의 교과학습 중심의 학습지원
특별지원 과정	청소년캠프, 부모교육, 발표회 등 특별프로그램 지원	-
생활지원	급식, 상담, 건강관리, 생활일정 관리(메일링서비스) 등의 생활지원	급식 주5시간 (주말격주 1시간추가운영)

셋째, 청소년 분야의 전문 인력 확보로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및 생활지도 제공이다. 운영실무자는 청소년 전문 자격증(청소년지도사)을 소지하고 청소년 분야 경력이 있는 자로 선발 기준이 있으며, 운영 실무자의 전문성함양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과정별 프로그램 강사 역시 해당 전공자 또는 경력을 확보하여 강사풀을 아카데미별로 운영하고 있음. 또한 아카데미 별 강사간 담화 및 교육 등 강사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성장에 맞는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청소년관리로 문제행동이 보이는 청소년은 지역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질 높은 청소년 개별 관리하고 있다.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방과후아카데미 내에서의 활동내용과 자녀들과의 단절될 수 있는 관계를 이어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넷째, 방과후아카데미의 든든한 후원자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역사회로부터 다양한 인적·물적 등

의 지원과 협조를 받고 있으며, 원활하게 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주기적으로 지원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여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상 논의사항, 청소년 선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방과후 활동 후 안전한 귀가지도(사회문제 현상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여건에 맞게 귀가지도(차량 및 도보)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평가를 통해 귀가지도 현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안전한 귀가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자가 동행하며, 보호자에게 청소년의 귀가를 알리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현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의 연혁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현황

년도	사업내용
200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 청소년위원회 발족 전후 전문여론조사기관 의뢰. 방과후 활동 실태조사
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 청소년위원회로 통합 출범하게 됨에 따라 4대 핵심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 선정 발표 ○ 7월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행계획 확정(공모사업 형태로 진행) ○ 9월 : 시범실시 46개소 운영, 시범운영평가를 통한 사업의 효과성 분석 및 발전방향(모델개발)제시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지역 확대(46→100개소), 지자체 매칭펀드 방식 도입 지역사업으로 전환 ○ 운영지역 확대에 따른 지역별·대상별 운영매뉴얼 보완 발전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지역 확대(100→150개소), 지자체 매칭펀드방식 ○ 설치대상시설의 확대(수련시설, 청소년공부방, 청소년단체시설, 학교 등) ○ 2007년 학교연계 시범아카데미 2개소 운영(부산시교육청연계)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지역 확대(150→186개소), 지자체 매칭펀드 방식 ○ 2008년 시범아카데미, 2007년 2개소의 연장운영(부산시교육청연계)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지역 축소(186→178개소), 지자체 매칭펀드 방식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축소(178→161개소), 지자체 매칭펀드방식, 평가미흡 10개소 등 17개소 지원중단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학대(161→200개소), 지자체 매칭펀드방식, 신규운영모형 (장애인 등) 개발 및 시범운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을 실시하는 시설별 현황 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수련시설 종류별 운영현황

지 역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단체	복지관	기 타	총 계
총계	114	6	56	9	7	6	198
서울	16	-	1	-	1	-	18
부산	6	1	4	-	-	-	11
대구	5	1	1	1	1	-	9
인천	5	-	-	-	1	-	6
광주	4	1	-	-	-	-	5
대전	2	-	2	-	1	-	5
울산	-	-	3	1	-	-	4
경기	19	-	18	1	-	-	38
강원	9	-	1	-	-	1	11
충북	7	-	-	1	1	-	9
충남	7	1	3	-	1	-	12
전북	8	-	8	-	-	-	16
전남	8	-	3	3	1	2	17
경북	6	1	1	-	-	3	11
경남	9	1	7	1	-	-	18
제주	3	-	4	1	-	-	8

* 기타 : 전남 강진교육발전협의회(시민단체), 전남 무안아카데미, 청소년지원센터(상주, 김천) 등

* 신규 기관 중 2개소 미운영(전남 화순군청소년수련관, 경남 산청군청소년수련관)

<표 5> 유형별 운영현황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지원형	31	93	141	178	174	158	*기본 : 154
일반형	5	3	5	5	2	1	*동산어촌 : 40
혼합형	10	4	5	2	2	2	*특별형 : 2
합 계	46	100	151	185	178	161	198

<표 6> 학년별 청소년 현황

지 역	초4	초5	초6	중1	중2	총 계
서울	94	267	240	50	55	706
부산	100	160	47	43	63	413
대구	96	176	90	0	0	362
인천	0	57	56	67	42	222
광주	48	76	80	20	20	244
대전	15	72	102	0	0	189
울산	0	29	37	40	41	147
경기	234	454	367	176	201	1,432
강원	71	145	152	46	49	463
충북	131	152	64	0	0	347
충남	105	141	118	48	46	458
전북	76	164	142	129	123	634
전남	109	148	145	119	107	628
경북	43	137	149	92	70	491
경남	97	217	196	67	73	650
제주	68	95	93	45	27	328
총 계	1,287	2,490	2,078	942	917	7,714

<표 7> 청소년 성별

지역	남자	여자	총계
서울	364	342	706
부산	220	193	413
대구	175	187	362
인천	97	125	222
광주	131	113	244
대전	95	94	189
울산	75	72	147
경기	726	706	1,432
강원	257	206	463
충북	149	198	347
충남	214	244	458
전북	334	300	634
전남	310	318	628
경북	239	252	491
경남	339	311	650
제주	171	157	328
총계	3,896	3,818	7,714

<표 8> 청소년 모집유형

지역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 가정	한부모 가정	기 타	총계
서울	273	118	151	136	28	706
부산	217	27	39	127	3	413
대구	216	39	31	66	10	362
인천	110	25	21	66	0	222
광주	144	13	48	21	18	244
대전	102	21	49	16	1	189
울산	72	9	31	34	1	147
경기	532	213	345	291	51	1,432
강원	166	60	101	97	39	463
충북	93	23	119	65	47	347
충남	218	58	74	96	12	458
전북	309	67	183	56	19	634
전남	319	52	73	132	52	628
경북	246	45	130	66	4	491
경남	247	62	129	158	54	650
제주	197	16	49	48	18	328
총계	3,461	848	1,573	1,475	357	7,714

<표 9> 청소년 가정상태

지역	부모 가정	모자 가정	부자 가정	조부모 가정	조부 가정	조모 가정	시설 보호	친척 양육	소년소녀 가장	기타	총계
서울	355	230	74	23	0	18	3	2	0	1	706
부산	212	119	59	11	1	8	0	1	0	2	413
대구	243	75	31	5	1	6	0	1	0	0	362
인천	111	69	31	9	0	2	0	0	0	0	222
광주	174	44	18	2	0	4	0	1	0	1	244
대전	122	42	13	7	1	3	0	0	0	1	189
울산	63	49	21	9	1	4	0	0	0	0	147
경기	812	391	143	32	3	26	8	11	2	4	1,432
강원	304	86	40	15	4	8	0	5	1	0	463
충북	252	45	28	12	0	9	0	1	0	0	347
충남	292	87	40	16	1	14	0	5	0	3	458
전북	439	104	50	13	4	16	2	5	0	1	634
전남	411	104	61	28	1	13	3	3	4	0	628
경북	258	127	46	24	1	26	4	3	2	0	491
경남	358	146	87	22	3	27	1	6	0	0	650
제주	195	67	37	18	0	7	0	2	2	0	328
계	4,601	1,785	779	246	21	191	21	46	11	13	7,714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유사사업 현황 비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유사한 사업으로 평가되는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학교사업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0>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학교사업의 주요 내용을 비교

구 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 센터	방과후 학교
주관 부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운영 개소 수	198개소	2,946개소	전국 초중고교 99.9% (11,160개교) * 교과 12만4천개, 특기적성 16만1천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운영
참여 아동· 청소년 수	7.7천명	97천명	439만명 ※ 전체 학생 중 59.5% 참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의·권리·의무·책임을 배우는 전인적 성장발달 도모 맞벌이·한부모·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교육활동, 복지활동 등을 통한 청소년의 푸른성장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내 빈곤·한부모 가족 아동 우선 보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교육기능 보완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구현 다양한 학습욕구 해소 및 보육을 통한 사교육비 부담완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실현
예산 (국비)	118억	767억	억

구 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학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벌이, 저소득 가정 청소년 초4~중2 ※ 99% 이상 저소득 청소년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곤·해체가정 청소년 18세 미만 ※ 70% 이상 저소득 청소년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무참여 또는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참여) 학업중단청소년, 지역주민 ※ 학교장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차이가 있음
운영 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형 : 기초생활 수급 대상, 부모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중점 대상 (농산어촌형, 특별형-장애청소년) 일반형 :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중점 대상으로 하여 보다 질적 수준이 높은 과정을 운영하는 모형(전원 수의자 부담으로 운영) 혼합형 : 지원형 대상 청소년과 일반형 대상 청소년이 혼합되는 형태 	-	-
참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형 전액 지원 일반형 일반가정 청소년의 경우 (월 15만원 ~ 2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강자 부담(1인 월 평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 : 32,805원, 1.6개 중등 : 23,417원, 2.6개 고등 : 28,672원, 4.9개 자유수강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가자 전액 지원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단체, NGO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법인·종교 시설 지자체운영 및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고 학교 위탁 비영리기관 및 단체
운영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일·방학 중 운영 일일 8시간 이상 운영 - 참여 청소년 1일 5시간 정규프로그램 참여 - 주 25~3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일·방학 중 운영 일일 8시간 운영 - 주5일 이상 운영, 토·일은 지역여건에 따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일·방학 중 운영 운영시간은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주 2~3시간)
운영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실무자 - 기관장, PM(프로젝트매니저), SM(스케줄매니저), 강사(교과·체험활동), 자원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실무자 - 시설장, 생활복지사, 아동복지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장, 담당 부장 및 교사, 현직교사, 외부강사
프로그램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스포츠, 과학탐구, 세계시민, 인성 및 기타 등 다양한 활동지원, 자기주도학습 및 주요교과목 지원, 캠프, 부모교육 등 생활지원(상담 등),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지원프로그램, 학습지원프로그램, 놀이 및 특별활동, 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과후 보육 특기적성 수준별 보충학습프로그램 평생교육프로그램 등
운영상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업무 과중 잦은 인력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사모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설협조 및 기자재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사모집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미흡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2회의 평가 운영 (2005년 시범운영부터 현재까지 운영) 효과·만족도 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년도 평가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장 재량 운영

위에서 살펴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유사사업의 차별성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년 지속적인 평가운영으로 안정적인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체계 구축하였다라는 점이다. 2005년 시범운영부터 매년 2회씩 평가 실시 → 사업수준 향상(2008년부터 평가결과 적정수준 운영 결과도출)을 시도하였고, 매년 평가지침을 수정·보완하여 현장 실정에 맞는 평가운영 및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하고 있다.

둘째, 다양한 청소년 활동이 가능한 종합 멀티 플레이스(청소년시설-공공기관)를 활용한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도모한다는 점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후 활동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 공간 및 기자재 확보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 욕구에 맞는 활동을 위한 다양하고 풍부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 즉, 청소년지도 전문 인력의 방과후 지도력,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별 전문 강사 확보용이성, 청소년 관련 기관의 원활한 연계·협력(다양한 지원체계 구축) 등을 갖고 있다.

넷째, 방과후아카데미 실무자(청소년지도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연수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현장의 방과후아카데미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운영을 지원하는 전달체계와 현장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즉, 현장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트라넷(실무자, 강사용)이 구축되어, 각종 안내 및 공지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소년, 실무자, 운영관리 등 방과후아카데미 업무에 필요한 내용들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상시 유선 컨설팅, 신규실무자 교육 등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운영하고 있다. 요컨대, 효율적인 방과후 서비스 지원을 위해 청소년 분야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방과후 청소년들을 사회적 문제에서 보호하고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다양한 활동을 체험함으로써 전인적 성장의 뒷받침하고 있다.

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효과 · 만족도 조사 결과

<표 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요 조사결과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만족도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 82.4점 학부모 : 82.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 81.4점 학부모 : 84.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 81.8점 학부모 : 82.7점 지도자 : 70.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 82.6점 학부모 : 82.7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 83.4점 학부모 : 83.0점
효과만족도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의 기초 제공 과도한 사교육비 감소, 사교육 차이로 인한 학력의 대물림 현상 완화 청소년 탈선·비행 예방 방과후 공적 서비스 확대를 통해 청소년에게 위기와 절망의 시간을 희망의 기회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성발달, 교우관계, 효율적 시간관리 능력 향상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에 기초적 토대를 마련 청소년과 학부모는 지도자 (PM,SM)와 강사에 대한 높은 수준의 생활지원 영역의 민족도 청소년의 학업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의 사회적 심리적 발달을 도모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사교육비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지원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을 제고하고 학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 졸업생 대상 프로그램 필요 지도자 만족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과 생활하고 변화모습에는 보람을 느끼고 있지만 처우문제와 안전성 측면에서는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심리적 발달을 도모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사교육비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지원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을 제고하고 학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 청소년들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좀 더 활성화되고 확대되어야 함 또한 지속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효과를 모니터링 하며 자료를 축적해나가는 자세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의 사회적 심리적 발달을 도모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사교육비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지원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을 제고하고 학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 청소년들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좀 더 활성화되고 확대되어야 함 또한 지속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효과를 모니터링 하며 자료를 축적해나가는 자세가 필요

4. 아동양육시설 현황과 자립지원 방안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1. 아동양육시설의 현황

1) 아동양육시설의 법적 위상

아동양육시설은 아동복지법상 제16조 제1항의 1호에 규정된 아동복지시설의 하나이다. 이 법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은 대부분 아동양육시설을 중심으로 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즉, 아동복지법 제2조 2호에 의해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되면, 대개 아동상담소가 상담을 하고 일시보호시설이나 아동단기보호시설에 머물게 하여 보호자를 발견하면 그 아동을 보호자에게 인계시킨다. 하지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자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아동을 입양시키거나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게 한다. 아동양육시설에 입소된 아동은 18세가 될 때까지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지만,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인 공동생활가정으로 분산되기도 하고, 문제행동을 일으키면 아동보호치료시설로 전원되고, 중·고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으면 아동직업훈련시설을 이용한다. 18세가 되어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였지만, 보호자가 없거나 거처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립지원시설을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상 상당수의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을 축으로 하여 운영된다.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

동센터만 아동양육시설과 다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조차도 아동복지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은 종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기존 아동 양육시설이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으로 아동복지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업무 외에도 아동가정지원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아동복지사업을 연계해서 수행할 수 있다.

2) 아동양육시설의 현황

2009년 말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280개소이다. 그중 아동양육시설은 239개소이고, 직업훈련시설 2개소, 보호치료시설 11개소, 자립지원시설 12개소, 일시보호시설 13개소, 종합시설 3개소이다. 2005년부터 2009년 까지 아동복지시설의 개소 수는 거의 변화가 없고, 직업훈련시설과 자립지원시설이 약간 줄어든 대신에 보호치료시설이 약간 증가되었다.

<표 1> 연도별 아동복지시설 현황

년도	계	양육시설	직업훈련 시설	보호치료 시설	자립지원 시설	일시보호 시설	종합시설
2005	282	242	4	8	13	13	2
2006	282	243	3	8	13	13	2
2007	282	243	3	8	13	13	2
2008	285	242	2	10	12	14	5
2009	280	239	2	11	12	13	3

※ 보호시설을 갖춘 아동상담소에 대하여 종합시설로 분류함

http://www.mw.go.kr/front/jc/sjc0111mn.jsp?PAR_MENU_ID=06&MENU_ID=06180301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은 2009년 현재 17,586명이고, 그중 아동양육시설이 239개소에 16,239명으로 대부분(92.3%)을 차지한다.

<표 2>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

2009. 12. 31 현재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현원)		양육시설		직업훈련 시설		보호치료 시설		자립지원 시설		일시보호 시설		종합시설		아 동 상 담 소	전 용 시 설	개인양육 시설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계	280	17,586	239	16,239	2	65	11	514	12	262	13	368	3	138	39	3	25	352
서 울	46	3,239	33	2,741	2	65	1	80	3	74	5	163	2	116	3	0	5	48
부 산	22	2,032	19	1,967	0	0	1	30	1	30	1	5	0	0	4	0	2	32
대 구	22	985	18	888	0	0	1	37	2	38	1	22	0	0	3	0	0	0
인 천	11	721	9	693	0	0	0	0	0	0	2	28	0	0	6	1	0	0
광 주	11	765	9	679	0	0	0	0	1	26	1	60	0	0	3	1	0	0
대 전	13	668	11	506	0	0	1	150	1	12	0	0	0	0	4	0	1	22
울 산	1	118	1	118	0	0	0	0	0	0	0	0	0	0	1	0	0	0
경 기	32	2,015	27	1,863	0	0	3	64	0	0	2	88	0	0	6	0	0	0
강 원	10	517	9	495	0	0	0	0	0	0	0	0	1	22	4	0	5	73
충 북	12	771	10	730	0	0	1	27	1	14	0	0	0	0	0	0	1	20
충 남	15	849	14	819	0	0	0	0	1	30	0	0	0	0	1	0	0	0
전 북	16	948	14	860	0	0	1	70	1	18	0	0	0	0	2	0	1	28
전 남	23	1,440	21	1,392	0	0	1	28	1	20	0	0	0	0	0	0	3	39
경 북	16	946	15	944	0	0	0	0	0	0	1	2	0	0	0	0	5	67
경 남	25	1,244	24	1,216	0	0	1	28	0	0	0	0	0	0	2	1	1	7
제 주	5	328	5	328	0	0	0	0	0	0	0	0	0	0	0	0	1	16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취학상황을 보면, 2009년 현원 17,586명 중에서 미취학아동이 3,097명이고, 초등학생이 6,329명, 중학생이 3,738명, 고등학생이 2,958명, 대학생이 692명, 기타 772명이다.

<표 3>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성별·취학 현황

2009. 12. 31 현재
(단위 : 개소, 명)

구분	시설 수	총사자 수	정 원	입 소 인 원		취 학 아 동								
				계	남	여	계	미 취 학		초등 재	중재	고재	대재	기타
								0~3세 미만	3~6세 미만					
계	280	5,278	23,843	17,586	10,105	7,481	17,586	1,006	2,091	6,329	3,738	2,958	692	772
서 울	46	1,058	4,418	3,239	1,854	1,385	3,239	224	300	1,538	552	340	67	218
부 산	22	534	2,625	2,032	1,137	895	2,032	75	392	450	537	469	75	34
대 구	22	312	1,584	985	569	416	985	52	120	344	204	155	66	44
인 천	11	241	981	721	401	320	721	84	60	279	173	117	0	8
광 주	11	223	1,000	765	430	335	765	97	107	281	129	100	30	21
대 전	13	196	942	668	423	245	668	40	72	172	116	78	22	168
울 산	1	38	150	118	67	51	118	13	12	46	25	22	0	0
경 기	32	621	2,344	2,015	1,152	863	2,015	171	222	793	361	348	41	79
강 원	10	159	707	517	273	244	517	24	68	211	99	86	23	6
충 북	12	242	1,001	771	439	332	771	31	99	277	170	126	14	54
충 남	15	231	1,090	849	491	358	849	24	90	327	180	142	56	30
전 북	16	286	1,308	948	579	369	948	31	114	313	251	188	36	15
전 남	23	437	2,200	1,440	825	615	1,440	42	147	420	364	305	121	41
경 북	16	242	1,358	946	550	396	946	35	108	323	215	201	49	15
경 남	25	360	1,760	1,244	722	522	1,244	30	140	420	304	237	76	37
제 주	5	98	375	328	193	135	328	33	40	135	58	44	16	2

3) 아동복지시설의 동향

아동복지시설의 대부분이 아동양육시설인 상황은 지난 10년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2001년 말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273개소에 18,808명이었고, 그중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238개소에

17,437명이었다(이용교, 2002).

하지만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양육시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이지만 위의 표에서는 누락된 아동 공동생활가정이 2010년 현재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것만도 350세대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에 3,500여개소에 이른다.

아동복지시설은 곧 아동양육시설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에서 아동양육시설은 점차 공동생활가정으로 대체되고, 지역사회에서 저소득 아동을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기존 아동양육시설도 고아원 모델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대안의 가정을 주는 본디의 사업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에게 대부분 부모 혹은 친인척이 있다는 점에서 원가족과 교류협력을 하면서 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 양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아동양육시설 관련 조사연구 분석

아동양육시설 관련 조사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아동양육시설에서 사는 아동이 2만명 미만으로 전체 아동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이들에 대한 정책이 정형화되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난 20여년간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몇 가지를 연구하였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이들의 욕구와 문제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요보호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¹⁾

이 연구는 1990년에 전국의 육아시설(이후 아동양육시설로 개칭) 224개소 중에서 임의로 1/3개소(75개소)를 선정하여 각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용 설문지 10부를 우편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국 규모의 조사연구로서는 최초이었고, 아동의 일반사항, 의식주, 학교생활, 시설생활, 장래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였

1) 최현 등이 쓰고 필자도 연구진으로 참여한 ‘요보호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 것이다.

다. 이 연구는 소년소녀가장 등 거액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 시설청소년과 재가청소년을 비교 연구했다는 점에서도 의미있었다. 이 연구는 육아시설이 흔히 “고아원”으로 불리지만, 육아시설 청소년의 7할 정도는 입소 당시 부모가 모두 살아있거나(34%) 적어도 아버지(14.7%) 혹은 어머니(19.7%)가 생존했지만, 입소한 후에는 부모와 자녀관계가 소원해지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했다.

2) 퇴소청소년의 자립에 관한 연구²⁾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아동은 18세가 되면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하게 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와 18세에 도달하는 시점이 일치하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에 시설을 퇴소한다(이용교, 2002).

그런데, 요보호아동의 퇴소가 곧 자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행 아동복지정책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퇴소한 아동을 어떻게 자립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다. 자립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퇴소는 ‘자립’이 아닌 ‘의존’이나 ‘반복지’를 초래하기 쉽다. 특히, 마땅한 주거가 없는 퇴소 청소년은 “침식이 제공되고 초보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쉽고 이러한 일자리는 대개 음식숙박업 등으로 값싼 노동시장인 경우가 많다.

아동복지법의 제정을 기준으로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아동복지는 요보호아동의 보호와 양육뿐만 아니라, 이들을 포함한 전체 아동의 자립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때이다. 요보호아동의 자립대책은 사전 준비, 퇴소 대책, 그리고 퇴소후 사후지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자립지원사업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방안과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였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그 아동의 자립능력의 유무나 자립상황에 상관없이 당연히 퇴소시켜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11조 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에서 계속 보호양육이 필요하

2) 필자가 쓴 ‘한국의 시설아동 자립지원정책의 개선방안’(2002)을 참조하여 재정리하였다.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장이 그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단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유(재학중, 기술훈련중, 질병·장애 등)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

첫째, 아동이 자립의 준비 없이 퇴소하는 상황이다. 가정집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녀가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독립된 주거를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으면 결혼할 때까지 함께 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세에 도달하면 ‘안정된 직장’을 얻거나 ‘경제적 자립’이 없이도 퇴소해야 하고 자립하기 어렵다.

둘째, 퇴소 아동이 안정된 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퇴소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300만원 내외의 금액은 7평 원룸의 임대보증금도 되지 못한다. 따라서 안정된 주거를 마련하지 못하는 퇴소 아동은 “숙식을 제공하는 직장”을 찾기 쉬운데, 이러한 일자리는 영세규모의 음식숙박업소 등으로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하거나 성적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는 일자리이다.

셋째, 퇴소아동은 갑작스럽게 상승한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한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았던 아동은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등을 받았다. 퇴소와 함께 이들은 복지시설에서 받았던 모든 급여를 받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늘어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

넷째, 정부가 보호를 중단한 아동에 대해서는 기업,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 등도 도움을 거의 주지 않는다. 민간이 운영하는 수많은 장학재단도 비슷한 처지라면 복지시설에 있는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청소년에게까지는 도움을 주지 않는다. 예컨대, 무주택자에게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아파트)의 경우에도 시설퇴소 아동은 “결혼하지 않은 단독가구” 이기에 입주대상자의 선정기준에서 가

장 낮은 점수를 받아서 사실상 입주하기 어렵다.

다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소한 아동·청소년의 사후관리를 사실상 방임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시행령 제9조는 “사·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양육·위탁보호를 받거나 귀가 조치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후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중인 아동이나 귀가조치 한 아동의 ‘사후지도’를 할 의무가 있지만,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의 사후관리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했던 아동복지시설도 퇴소 이후에는 사후지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전혀 없기에 이들의 자립은 방임되어 있는 셈이다.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위해서는 퇴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첫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과 청소년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시설의 기능을 “보호와 양육”에서 “보호와 양육 그리고 자립”으로 크게 바꾸어야 한다. 정부는 “아동양육시설의 기능을 아동의 보호와 양육 그리고 자립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아동양육기관의 핵심 기능에 ‘자립’을 포함시키지 않은 한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기능상의 변화에 근거해서 아동양육시설은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적합한 진로지도교육, 직업현장체험, 아르바이트 기회제공, 직업지도 후원자 개발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문대학과 대학교로 교육급여를 확대시켜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고등학교과정까지 교육급여를 실시하고 있지만, 대학교 취학률이 약 80%이고, 시설보호를 받는 아동과 청소년은 가정집의 아동·청소년과 경쟁을 통해서 자립을 해야 하기에 교육급여의 수준을 대학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문대학에 우선 실시하고 4년제 대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 현재도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간 450만원까지 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

는데, 이를 교육급여로 제도화시키는 것이 한 방법이다.

셋째, 자립생활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해야 한다. 아동양육시설은 각 시설에 1개소 이상씩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면서 입소 초기에 대규모 시설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과 조만간 퇴소한 아동·청소년에게 가정집의 분위기와 자립생활의 경험을 익히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퇴소 아동을 위해서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국에 그 수가 매우 적고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이후까지 집단생활을 하려는 아동·청소년이 극소수이기에 모든 아동양육시설에 1개소 이상씩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게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다.

넷째,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소비자교육과 신용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아동·청소년은 비록 직업생활을 통해서 일정한 소득을 얻더라도 합리적인 소비생활의 경험이 적기 때문에 돈을 낭비하거나 무분별한 소비로 신용불량자가 되기 쉽다. 시설 아동청소년에게 적은 용돈이나 후원금이라도 반드시 저축을 한 후에 사용하게 하고, 선불카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험을 늘려서 퇴소 후에 갑자기 신용카드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가르친다.

다섯째, 치료형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현재 아동양육시설에는 단순히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아동뿐만 아니라 상당한 문제행동을하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도 적지 않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중에는 이러한 아동을 “보호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상 거의 없다.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아동의 문제행동을 초기에 예방하거나 개입하여 치료할 수 있고, 아동학대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상당기간 보호하며 치료할 수 있는 치료형 보호시설을 적어도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그리고 주요 대도시에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시설과 예산은 정원이 점차 줄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을 시도단위로 1개소 이상씩 줄이고 그 시설 혹은 부지를 재활용하면 좋은 것이다.

여섯째, 현행 자립지원제도를 개선시켜 자립지원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항상시켜야 한다.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사람은 대부분 자립지원 대책이 없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전국에 12개소의 아동자립관(자립지원시설)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은 220여명인데 이는 매년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는 1000여명의 1/5에 불과하고 이들이 2년 동안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퇴소아동의 1/10밖에 자립지원시설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자립지원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퇴소 청소년의 9/10는 제도적 장치로서 사후지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아동양육시설과 비공식적인 관계를 맺을 뿐이다.

아동양육시설의 운영자와 근무자에 따르면 퇴소한 사람과의 비공식 관계도 안정적인 직업을 갖은 사람들과는 형성되어 있지만, 직업의 불안정 등으로 사후지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관계형성이 더 안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의 사후지도를 임의적인 사업에서 제도적 사업으로 개편하고, 적어도 퇴소후 2년 동안은 분기별로 1회 이상 면접상담, 현장지도, 집단지도활동 등 사후지도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사후지도를 제도화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위해서 모든 아동양육시설에 생활지도겸 사후지도 담당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아동이 50명이상인 시설에는 생활복지사를 두 명 이상 배치하여 시설에서의 상담과 현장지도를 크게 강화시킨다.

일곱째,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전세금액의 수준으로 지급하거나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하는 사람에게 ‘자립정착금’의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 300만원 내외를 지급하고 있다. 이 금액은 7평 원룸의 전세금에도 턱없이 부족하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길거리로 내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가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과 함께 ‘주거지원’을 해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살기 위해서는 ‘85제곱미터이하’ (25.7평)의 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면서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국민의 주거지원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다.

자립정착금의 액수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일반 주택지에 있는 단칸방 혹

은 원룸을 전세로 임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이를 일시에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1/2은 자립정착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2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자립정착금의 액수는 해당지역에서 원룸을 얻을 수 있는 액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시에 목돈이 들어가는 시책이기에 아동양육시설의 장이 전세권자가 되어서 아파트를 임차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3)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비교연구³⁾

한국사회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다양한 아동복지서비스 중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청의 조치에 의해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기 쉽다. 아동양육시설은 고아원의 전통을 갖고 있기에 부모 혹은 연고자와의 면접교섭권을 핵심적인 권리로 인식하지 않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아동은 부모와 분리되지 않고 원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라기 쉽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양식을 찾을 때,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아동의 의사표명권을 존중하며, 대안가정에서 살지라도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을 장려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 모니터링을 시도하였다.

2009년 10월 20일 한국아동복지협회 광주지부 시설장님과 간담회를 거쳐서 설문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10월 21일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11월 10일까지 접수하였다. 10개의 아동양육시설 중에서 설문에 응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288명을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응답자가 다니는 학교, 학년, 성별, 나이를 파악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유형(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을 본 후에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3) 이 글은 필자가 책임자로 수행한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의 권리상황 모니터링’의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발간한 ‘2009년 아동권리모니터링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하기 전에 누구와 함께 살았고, 어떤 과정으로 시설에 입소되었으며, 입소 후에 부모 혹은 연고자와의 면접교섭권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 총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학력은 초등학생 44.4%(128명), 중학생 33.7%(97명), 고등학생 21.9%(63명)이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47.6%(137명), 여자가 52.4%(151명)이다.

아동복지시설에 처음 들어올 때의 연령은 만 나이로 6세가 12.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3세(12.6%), 7세(12.2%) 등의 순이다. 입소 연령으로 3세가 많은 이유는 아동양육시설의 기준 유형은 육아시설이었는데, 영아시설에서 육아시설로 전원되는 연령이 3세이었기 때문이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기 전에는 누구와 함께 살았는지를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산 경우가 전체의 24.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아버지(18.5%), 어머니(7.3%)의 순이다. 조손가족이라고 불리는 할머니(9.8%)와 외할머니(2.8%)와 함께 산 경우도 있었다. 누구와 함께 살았는지 모른 경우가 24.0%에 이른 것은 입소시 연령이 너무 낮아서 인지하지 못한 경우로, 이들은 대개 미혼모보호시설 등에서 출산되어 입소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이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함께 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모른다가 40.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부모의 이혼(29.2%), 빈곤(5.6%), 가출(5.3%), 사망(3.5%) 등의 순이다. 너무 어린 나이에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여 누구랑 함께 살았는지 잘 모른 경우가 많았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시설에 들어오기 전에 앞으로 살 시설(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는 13.2%이고, 설명을 약간 들었다(18.5%)를 포함하더라도 설명을 들었다는 의견은 전체의 31.7%에 불과하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의견이 전체의 30.0%이고, 잘 모른다가 38.3%이었다.

아동복지시설 입소시 아동이 시설에 대한 설명을 얼마나 충분히 들었는지는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즉 아동

양육시설은 설명을 충분히 혹은 약간 들었다는 응답이 29.6%에 불과했지만, 공동생활가정은 76.9%로 훨씬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공동생활가정은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기관이기에 아동에게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하게 했지만, 아동양육시설은 시·군·구청의 조치에 의해서 입소되는 관행 때문이다. 하지만 아동권리협약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동의 최선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자신이 살 곳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향후에는 아동에게 보다 충분히 설명한 후에 거주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아동복지법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이용 가능한 아동복지서비스는 입양, 가정위탁보호,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의 입소 등이 있다. 그중 주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된 아동에게 시설에 들어오기 전에 시설(아동양육시설)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살 것인지를 결정할 때, 본인의 의견을 들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아동은 “나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했다”는 것은 13.3%이고, 나의 의견을 약간 고려하여 결정했다(7.7%)를 포함하더라도 입소시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비율은 전체의 20.0%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나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다가 20.6%이었고, 너무 어려서 잘 모른다가 58.4%에 이른다.

아동복지시설 입소시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도는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아동양육시설은 아동의 의견을 고려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17.5%에 불과했지만, 공동생활가정은 53.9%로 과반수를 넘었다. 아동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 잘 모른다는 수치를 고려하더라도 아동양육시설은 입소시에 아동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반면 공동생활가정은 아동의 의견을 일정 정도 고려하는 듯하다.

이 질문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양식을 결정할 때,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아동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결정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아동이 의사표현을 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여서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비율이 전체의 6할 가량이고, 2 할은 아동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지만, 2할은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아동양육시설의 입소는 공동생활가정의 입소, 가정위탁보호 등 다양한 아동보호양식 중의 하나로 선택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대체로 미혼모가 출산한 영아는 입양이 우선되었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양육시설로 입소되었다.

2004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공동생활가정이 법제화되었지만(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10호), 시·군·구청 아동복지담당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여전히 아동양육시설에 입소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아동에게 시설에 들어오기 전에 아동양육시설 이외에 공동생활가정(5~7명의 아동이 2명의 어른과 사는 작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살거나, 가정위탁(부모의 역할을 하는 가정에서 사는 것)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는 6.3%이고, 설명을 약간 들었다(12.6%)를 포함하여 설명을 들은 경우는 18.9%에 그쳤다. 나머지는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29.1%), 잘 모른다(51.9%)이었다. 잘 모른 경우에는 입소시 연령이 아주 낮아서 설명을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현재 본인이 서비스를 받는 양식 이외에 다른 보호양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를 보면, 시설 유형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아동양육시설에 사는 아동은 다른 보호양식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람은 17.2%에 불과했고, 공동생활가정에서 사는 아동은 53.9%가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이점에서 아동양육시설에 사는 아동은 다른 보호시설에 대한 설명이나 선택권이 없이 시설에 입소한 경우가 많았고, 공동생활가정에서 사는 아동은 절반이상이 다른 보호양식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입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질문에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한 아동에게 만약 처음 입소할 당시에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다면, 가장 살고 싶은 곳은 어느 곳인지를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아동양육시설이 23.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공동생활가정(11.8%), 가정위탁(16.5%)이고, 잘 모른다도 48.1%에 이른다. 잘 모른다를 제외하면 아동들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할 당시에 공동생활가정이나 가정위탁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선택할 수 있었다면, 가정위탁과 공동생활가정을 선택하겠다는 아동이 아동양육시설보다 많았다.

만약 설명을 들었다면 가장 살고 싶은 곳이 어디냐는 질문에 현재 아동양육시설에 사는 아동과 공동생활가정에 사는 아동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아동양육시설 아동은 살고 싶은 곳을 잘 모른다(48.7%), 아동양육시설(24.6%), 위탁가정(15.4%), 공동생활가정(11.4%) 순으로 응답하였고, 공동생활가정 아동은 위탁가정(44.4%), 잘 모른다(33.3%), 공동생활가정(22.2%) 순이고, 아동양육시설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혀 없었다. 이는 대부분의 시·군·구청 아동복지담당자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아동양육시설에 입소를 조치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가정위탁이나 공동생활가정의 입소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공동생활가정이나 위탁가정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아동은 전체의 13.9%이고, 좀 더 알고 싶다(21.6%)를 포함하여 알고 싶다는 사람이 전체의 35.5%이며, 별로 관심이 없다는 아동은 49.1%이었다. 아동양육시설 아동 중 절반은 현재의 생활양식에 만족하고, 대안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은 전체의 35.0% 가량되었고, 공동생활가정 아동은 대안가정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다는 사람이 46.2%이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살다 가정을 떠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친부모와의 면접교섭권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통학권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쉽고, 심지어 생활권이 다른 지역으로 배치되기도 한다. 자신이 살아왔던 시·군·구에 아동복지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다소 불가피한 일이지만, 정원이 5~7명인 공동생활가정이 별로 많지 않는 것은 시설 입소를 계기로 생활권의 이동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 들어오기 위해서 생활권을 옮기게 되면 다녔던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을 옮기게 될 수도 있다.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혹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지를 보면, 어린이집에 다녔다가 전체의 13.2%이고, 유치원에 다녔다 16.0%이며, 학교에 다닌 경우에는 34.4%이고, 학교 등을 전혀 다니지 않는 경우는 35.1%이었다. 학교 등에 전혀 다니지 않는 경우는 아동의 나이가 매우 낮았기 때문인 듯하고, 65% 가량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다닌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아동양육시설에 사는 아동과 공동생활가정에 사는 아동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아동양육시설 아동은 나이가 어려서 영유아보육시설이나 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공동생활가정에 사는 아동은 학교에 다닌 경우가 전체의 69.2%이었다.

한편, 시설에 들어오기 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혹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경우만 답변하도록 한 설문에서, 아동이 시설에 들어오면서 다니던 학교 등을 옮겼는지를 확인하였다. 이 질문에 옮기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14.6%에 불과했고, 46.2%가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옮길 필요가 없었다(4.5%)와 해당사항이 없다(14.6%), 무응답(20.1%)이다. 요약하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학교 등에 다니지 않아서 전학 등이 필요하지 않았던 아동이 전체의 40% 가량 되고, 학교 등을 다닌 경우에는 4명중에서 3명 이상이 전학을 한 것으로

로 나타났다.

현재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 사는 아동간에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면서 학교 등을 옮겼는지를 보면, 아동양육시설 아동은 공동생활가정 아동에 비교하여 좀 더 많이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생활가정에 사는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입소시에 학교 등을 다닌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공동생활가정의 입소가 아동의 전학 등과 같은 환경의 변화를 좀 더 덜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아동이 부모 혹은 보호자와 떨어져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기존 통학권에 적절한 복지시설이 없어서 전학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향후 아동복지정책을 개발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만약, 70명 정원의 아동양육시설을 설치한다면 한 시·군·구에 1개소의 시설을 운영하기도 어렵지만, 5~7명 정원의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다면 10~14개소를 설치할 수 있기에 통학권이나 생활권이 동일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에게는 부모나 가족 다음으로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집단이 친구(특히 마을친구나 학교친구)라는 점에서 볼 때,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것은 부모(가족)와 분리될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도 인간관계를 단절하게 되는 계기된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일이다.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혹은 학교를 옮긴 경우에, 시설에 들어오면서 전학 등을 할 때 아동에게 의견을 물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전학 등을 할 때 아동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했다는 응답이 15.6%이고, 의견을 약간 고려하여 결정했다(10.0%)를 포함하더라도 25.6%에 불과했다. 반면에 아동은 전학 등을 할 때 자신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전체의 32.8%이고, 너무 어려서 잘 모른다는 아동이 41.7%이었다.

전학 등을 할 때 아동의 의견을 고려했는지는 아동복지시설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아동양육시설 아동은 의견을 고려한 경우가 전체의 24.4%이고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34.3%인데 비교하여, 공동생활가정 아동이 나

이가 너무 어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아동이 너무 어려서 잘 몰랐거나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전학 등을 아동의 의사를 물었어야 한 경우에 아동의사를 물어서 결정하기보다는 아동의 의사를 묻지 않고 결정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정신에도 배치되는 일이다.

시설에 들어온 후에 가장 자주 만나는 부모나 보호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동은 아버지가 23.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어머니(18.7%), 아버지와 어머니(8.5%), 할머니(4.9%), 외할머니(2.8%)의 순이다. 한편, 부모나 조부모가 아닌 다른 친척 등인 기타가 17.0%이고, 모른다가 23.2%이다.

시설에서 자주 만나는 부모와 보호자는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등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공동생활가정은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와 이별하여 부모 혹은 보호자와 교류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서 기인하기보다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의 입소시 가족상황에서 비롯된 듯하다. 이러한 사항을 볼 때 아동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장 잘 만나는 부모나 보호자와는 얼마나 자주 만나는 편인지를 보면, 1개월에 한번 이상이 31.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3개월에 한번 정도(18.6%), 6개월에 한번 정도(12.6%) 등의 순이다. 한편 만나는 부모나 보호자가 없다는 아동(22.1%)은 부모와의 면접교섭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아동 중에서 2할 이상은 매우 어린 나이에 부모와 분리되었기에 친부모와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는 부모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1개월에 한번

이상 비교적 자주 부모와 면접교섭을 하는 사람은 전체의 3할 가량이고, 나머지는 간헐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사는 아동에게 시설에서 믿고 의지할 만한 어른(원장, 직원 선생님을 포함하여)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여러 명 있다는 아동이 전체의 56.5%이고, 한두 명 있다는 아동이 28.8%이며, 거의 없다는 아동이 14.7%이었다.

아동복지시설의 유형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아동양육시설 아동은 여러 명이 있다는 응답이 많고(58.1%), 공동생활가정은 한두 명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69.2%). 이는 아동양육시설에는 담당하는 생활지도원을 포함하여 생활복지사, 사무국장, 원장 등 다양한 어른이 있지만, 공동생활가정에는 2명의 시설장과 생활지도원만 있기 때문이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사는 아동에게 시설에서 믿고 의지할 만한 선배(형, 누나, 언니, 오빠 등)가 있는지를 물었더니, 여러 명 있다는 아동이 전체의 40.8%이었고, 한두 명 있다는 아동이 34.8%이며, 거의 없다는 아동이 24.4%이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아동복지시설의 유형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아동양육시설 아동은 여러 명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고(41.6%), 공동생활가정은 거의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53.8%). 이러한 차이는 아동양육시설에는 70~100명 내외 아동이 함께 생활하고, 공동생활가정에는 5~7명의 생활하기에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은 선배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 듯하다.

시설에서 믿고 의지할 만한 어른이 있는지와 선배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통해서 볼 때, 공동생활가정은 구성원 수가 적기 때문에 구성원간에 긴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만, 혹 구성원간에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에는 아동양육시설보다 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일 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입양,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의 입소 등을 포함하여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이 나이가 너무 어린 경우에는 전문가와 부모의 판단에 의해서 서비스가 결정되겠지만, 아동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아동에게 각 서비스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아동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아동복지서비스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부모나 연고자 이외의 대리가정에 배치될 때, 아동이 다녔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끊기지 않고도 아동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학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아동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전학을 시켜야 한다.

셋째, 아동복지시설에서 사는 아동이 부모 혹은 연고자와 면접교섭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에게 부모 혹은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월 1회 이상 만나는 경우는 소수이고, 3개월에 한번 혹은 그보다 더 드물게 면접교섭을 하고 있는데, 아동의 부모와의 면접교섭권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아동이 원가족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아동복지시설에서 부모의 방문을 적극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넷째, 아동복지시설에서 사는 아동이 믿을 만한 어른과 선배를 가질 수 있도록 인간관계 형성에 좀 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 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믿을만한 인간관계의 형성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이다. 특히 소규모 보호양식인 공동생활가정은 직원의 수가 소수이기에 자원봉사자, 후원자들과의 교류의 기회를 늘려서 아동의 인간관계 형성에 좀 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

다섯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아동양육시설에서의 보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가급적 원가족을 지원하여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입양,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등 대안의 가정을 통한 보호방식을 보다 폭넓게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 아동양육시설의 정원은 70~100명이 많기에

시·군·구단위에 1개소도 설치되기 어려운데, 공동생활가정은 정원이 5~7명으로 읍·면·동에 1개소씩도 배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아동양육시설이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사업의 지침을 개선하고, 공동생활가정과 가정위탁을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아동복지정책의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한국사회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하던 방식을 바꾸어서, 가급적 아동이 원가정에서 살 수 있도록 가족복지를 활성화시키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안 가정에서 보호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국내입양,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을 보다 제도화하여 아동의 권리와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아동복지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번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이 아동복지정책의 전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3. 향후 패널조사를 위한 제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패널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숙고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입소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꼭 필요하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현재 해당 시·군·구청의 조치와 처음 의뢰받은 기관에서 권장하는 서비스에 의해서 입양, 가정위탁보호,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입소 등이 결정된다. 즉 어떤 아동이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는 아동상담소에 의뢰되면 입양되기 쉽고,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의뢰되면 위탁가정에서 보호되기 쉽다. 따라서 아동양육시설에서 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패널조사만으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의 상황을 충분히 연구하기 어렵다. 반드시 공동생활가정을 포함시켜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위탁보호, 입양된 아동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조사대상자를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아동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으로 규정하여 아동양육시설, 공동생

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과, 가정위탁, 입양(현실적으로 국내입양)된 아동/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아울러, 각 서비스 대상자 유형별로 표본조사를 엄격히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아동복지서비스를 받는 아동청소년의 삶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복지서비스를 받는 아동/청소년의 삶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참여권 그리고 아동권리보장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단순히 아동의 의식주, 학습, 여가, 진로 등에 한정되어서는 안되고, 친구관계, 직원과의 관계, 원가족을 포함하여 친인척과의 관계, 자립에 대한 준비, 그리고 퇴소 이후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해야 한다. 가정에서 생활했던 아동이 시군구의 조치에 의해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게 될 경우에 아동의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고 시설에 입소시켜서, 아동은 원가족과 분리될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끊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친구들과도 분리되기 쉽다. 따라서 패널조사는 아동의 가족관계, 친구관계와 함께 다양한 인간관계 등을 포함한 정서적 발달을 조사해야 한다.

셋째, 아동복지서비스를 받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사에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비교연구가 꼭 필요하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아동복지정책은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다. 입양은 국내입양 우선정책이 정착되었고, 공동생활가정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사업은 가정위탁지원사업으로 대체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복지시설인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에 한정시키지 말고, 공동생활가정을 연구하여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간의 비교연구, 생활시설과 가정위탁간의 비교연구 등이 종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패널조사는 필자가 2009년도 연구한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비교연구’를 적극 참조하여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비교하고, 기존 아동양육시설의 사업과는 크게 차별화 되어 있는 가정위탁지원

사업, 입양사업의 서비스를 받는 아동/청소년의 생활양식에 맞는 조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이 원가족 혹은 친인척과 교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그것이 그 아동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그동안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시설 내에서 생활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향후에는 원가족을 포함하여 친인척과의 교류를 보다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아동복지시설과 친인척이 어떻게 하면 통합적으로 양육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시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18세 미만까지(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상까지) 양육하는 곳이 아니라, 언제든지 원가족(혹은 친인척)이 양육할 수 있을 때 되돌려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던 아동청소년이 중도에 퇴소하는 이유, 만 18세 이후에 퇴소하는 이유, 그리고 그 아동청소년들의 자립과정에 대한 연구가 꼭 필요하다.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중에서 중도에 가정으로 되돌아가는 아동과 시설에서 쭉 생활하다 퇴소하는 아동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종단연구해야 할 것이다. 패널 연구의 성격상 아동양육시설에서 사는 아동 중에서 18세 전에 중도에 퇴소하면 사례에서 제외되기 쉬운데, 계속 아동양육시설에서 사는 경우와 중도에 시설을 퇴소한 아동 사이에는 어떤 욕구와 문제가 있는지를 비교연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18세 이후에 퇴소한 경우에도 적어도 5년간은 추적 조사를 하여 자립과정에 대해서도 밀도있는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패널 조사에 아동의 자립에 대한 준비, 퇴소후 자립과정에 대한 설문내용이 다수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사와 같은 양식으로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국내입양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도 패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향후 보호양식을 교차시켜서 서비스를 받는 아동청소년이

늘어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추적 조사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패널조사에서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사망, 이민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원가족에 복귀와 같은 사유가 생기더라도 가급적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위에서 제안된 연구가 그 아동의 성별, 연령별, 아동복지시설에 첫 입소한 연령, 입소할 당시 부모의 상황(부모의 사망, 이혼, 기타 등), 아동의 지적 능력, 아동의 성격유형, 고등학교 유형(일반계, 전문계, 특수목적, 특성화, 기타), 부모 혹은 친인척과의 교류형태(자주 교류, 가끔 교류, 전혀 교류 없음) 등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연구하여 보다 종합적인 청소년복지 서비스를 모색해야 한다. 설문내용에는 아동에 관한 사항과 함께, 아동의 원가족과 친인척,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학교와 교육환경, 친구관계, 지역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서 아동을 환경속의 인간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한 외,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 길은배·이용교·김영지, 청소년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연구원, 2001.
- 김승권 외,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복지증진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김현룡 외, 현대사회와 아동, 소화, 1997.
- 김형태 외,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 현황분석 및 매뉴얼 개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6.
- 미국아동복지시설연맹 편, 차인홍·송경옥 역(2004), 아동복지시설 서비스 기준, 서울: 은평천사원출판부.
- 신혜령 연구팀, 아동복지담당 공무원 면접자료, 국립보건원, 2002 (내부자료).
- 신혜령 연구팀, 아동복지시설 운영자 면접자료, 국립보건원, 2002 (내부자료).
- 이명묵, “육아시설 퇴소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2권 제1호, 한국청소년연구원, 1991.
- 이용교, 한국청소년복지의 현실과 대안, 은평천사원 출판부, 1993.
- 이용교, 복지는 생활이다, 인간과복지, 2001.
- 이용교, 한국의 시설아동 자립지원정책의 개선방안, 2002
- 이용교, 청소년인권과 인권교육, 인간과복지, 2004.
- 이용교, 디지털 사회복지개론, 인간과복지, 2006.
- 이용교 외, 한국의 아동복지학, 양서원, 2000.
- 이용교 외, 한국의 아동청소년권리, 인간과복지, 2005.
- 이용교 외,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개발연구, 청소년복지연구,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06.
- 이태수·함철호·이용교,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실태와 활성

화방안”, 한국아동복지학 제5호, 서울: 한국아동복지학회, 1997.
이혜연 외,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최현 외, 요보호청소년의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1999.
한국아동단체협의회, 2009 아동권리모니터링 결과보고서, 2009.

子どもの権利條約總合研究所(2002), 川崎發子どもの権利條例,
エイデル研究所,

子どもの権利條約ネ c トワーク編(2001), 學習, 子どもの権利條
約, 日本評論社.

高橋重宏(2000), 子どもの権利擁護, 中央法規出版.

Council of Europe(1996), The rights of the child: A European
perspective, Council of Europe.

Davidson, S,(1993), Human Rights,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United Nations(2001), CRC-General Comment No.1-The Aims of
Education, United Nations.

(2002), CRC-General Comment No.2-The Role of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2002), CRC-General Comment No.4-Adolescent
health and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5. 본조사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신중식 [동서리서치 차장]

1. 본 조사 추진개요

1) 기간 작업 추진경과 개요

- 본 보고서는 지난 12월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단연구(이하 종단
연구) 예비조사 완료 이후 본조사 실시를 위한 준비업무 진행경과에 대하
여 상술하고, 향후 본조사 일정 계획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됨.
- 올해 본조사 관련 진행업무의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표 1> 진행업무의 추진경과

구 분	진행업무	결과
2월	1. 면접원 좌담회 진행 2. 전용 CAPI 프로그램 개발개시	완료 완료
3월	2. 전용 CAPI 프로그램개발완료	완료
4월	3. 설문안 조정회의	완료
5월	4. 사전조사 및 샘플링 확정	진행중

2) 면접원 좌담회

- 예비조사 투입 실사팀에 대한 연구팀의 좌담회 진행.
- 조사현황에 대한 애로사항 및 현장상황에 대한 사후 점검차원으로 예
비조사에 투입된 본사 및 지사 면접원을 대상으로 NYPI의 연구진이 진행
함.

<표 2> 면접원 좌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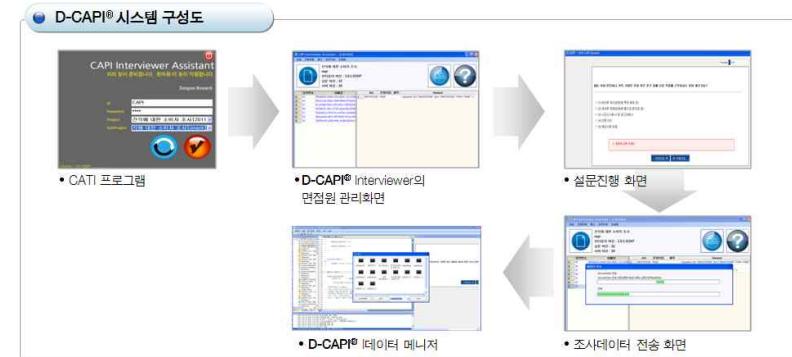
장소	일시
서울본사	1/27 (목)
대구	2/7 (월)
대전	2/9 (수)
광주	2/15 (화)
부산	2/24 (목)

3) CAPI시스템 구축

- 본조사 대비하여 동서리서치 전용 CAPI시스템의 현행화 작업을 개시하여, 3월 구축 완료함.

<표 3> CAPI시스템 개요

주요스펙	내 용
개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서리서치 시스템개발 운영팀 기노옥 차장 전산개발 경력 9년 동서리서치 D-CAPI 개발 및 책임운영 전담
개발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5년 노동부 사업체 패널조사 BALISE 기반 수행 2007년 국제 블레이즈 컨퍼런스 참석 2008년 D-CAPI 1차 개발 2011년 D-CAPI ver.2.0 개발 완료
타사대비 강점 (업데이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크립트 간편화로 개발 시간 단축 면접 시 응답 대기 시간 대폭 단축 CAPI와 CAWI(온라인 조사) 동시 수행 가능 DB insert 과정 생략 및 기간 단축



4) 설문지 확정 프로세스

- NYPI 내부 워크샵 참여(4/21).
- 예비조사후 각 기관 의견 반영하여, 시설 유형 설문안 조정
- 자문진 의견반영
- 최종설문 확정 후 CAPI시스템에 등재, CAPI운영부서에서 로직 오류(프로그램 테스트) 점검(1주 소요)
- 오류수정 및 최종본 배포

5) 조사설계(샘플링) 작업 진행

(1) 모집단 현황 파악조사 진행

- 표본추출을 위해서는 모집단의 분포 현황을 알고 있어야 함. 이를 위해 최근작 시설현황자료를 입수하는 한편, 사전 전화조사를 통해 모집단 현황을 파악함.

- 전화 컨택을 통해 조사대상이 되는 모집단파악(초등학교 4학년생 시설이용 여부 및 남녀별 인원수) 및 본조사 진행에 대한 사전 홍보작업 전

개함(모집단 확보를 위한 사전조사는 5/19 개시~6/7 완료됨)

- 예비조사에서는 지역별 비례배분 방식으로 할당했으나, 본조사 설계의 경우, 시설유형별, 지역별로 편중 우려가 나타남. 지역아동센터의 조사대상아동이 방과후아카데미 및 양육시설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제곱근비례배분을 활용, 시설별 조사샘플수를 할당함.

<표 4> 모집단 현황

지역구 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양육시설	
	시설 수	초등 4년생	시설 수	초등 4년생	시설 수	초등 4년생
서울	367	1,141	18	94	38	203
부산	185	552	11	100	22	78
대구	147	483	9	96	20	39
인천	174	596	6	0	13	33
광주	218	942	5	48	10	28
대전	144	547	5	15	13	32
울산	52	169	4	0	1	7
경기	679	2,621	38	234	30	127
강원	159	545	11	71	10	18
충북	185	671	9	131	10	39
충남	200	692	12	105	14	50
전북	267	1,027	16	76	15	45
전남	368	1,463	17	109	22	56
경북	232	784	11	43	13	38
경남	244	717	18	97	23	54
제주	69	310	8	68	4	14
합계	3,690	13,260	198	1,287	258	861

(2) 조사샘플수 배분

- 우선 제곱근 비례배분방식으로 각 시설유형별 샘플 할당수를 산출한 결과, 지역아동센터에서 638표본, 방과후아카데미에서 199표본, 양육기관에서 163표본이 할당됨(총 1,000표본)

- 각 시설유형별 샘플할당수를 기반으로 지역별 샘플수를 할당함. 할당 결과 서울지역 지역아동센터의 초등 4년생 1141명 중 55명을 패널로 확보해야 함.

<표5> 지역별 조사대상 표본수

지역 구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양육시설	
	초등 4년생	조사 표본수	초등 4년생	조사 표본수	초등 4년생	조사 표본수
서울	1,141	55	94	15	203	39
부산	552	27	100	15	78	15
대구	483	23	96	15	39	7
인천	596	29	0	0	33	6
광주	942	45	48	7	28	5
대전	547	26	15	2	32	6
울산	169	8	0	0	7	1
경기	2,621	126	234	36	127	24
강원	545	26	71	11	18	3
충북	671	32	131	20	39	7
충남	692	33	105	16	50	10
전북	1,027	49	76	12	45	9
전남	1,463	70	109	17	56	11
경북	784	38	43	7	38	7
경남	717	34	97	15	54	10
제주	310	15	68	11	14	3
합계	13,260	638	1,287	199	861	163

(3) 조사대상 시설(집락)수의 선정

● 다음은 시설유형별, 지역별로 조사를 진행할 집락, 즉 시설수를 산출함. 서울지역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조사를 진행해야 할 아동수가 55명이며, 시설당 평균 조사대상 아동 수가 3명이므로, 추출해야 할 시설은 18개소가 됨. 서울 소재 367개소 지역아동센터 중 18개 시설을 추출, 3명의 아동을 조사하게 됨.

<표6-1> 지역아동센터 조사표본 할당표

지역 구분	지역아동센터				
	시설 수	초등4년생 전체	조사표본수	시설당 평균 조사대상 아동 수	추출시설수 (집락)
서울	367	1,141	55	3	18
부산	185	552	27	3	9
대구	147	483	23	3	7
인천	174	596	29	3	8
광주	218	942	45	4	10
대전	144	547	26	4	7
울산	52	169	8	3	3
경기	679	2,621	126	4	33
강원	159	545	26	3	8
충북	185	671	32	4	9
충남	200	692	33	3	10
전북	267	1,027	49	4	13
전남	368	1,463	70	4	18
경북	232	784	38	3	11
경남	244	717	34	3	12
제주	69	310	15	4	3
합계	3,690	13,260	638		179

● 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에도 동일한 요령으로 조사대상 시설 수를 산출함. 서울지역 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조사를 진행해야 할 아동수가 15명이며, 시설당 평균 조사대상 아동 수가 5명이므로, 추출해야 할 시설은 3개소가 됨. 서울 소재 18개소의 방과후아카데미 중 3개 시설을 추출, 시설당 5명 총15명의 아동을 조사하게 됨.

<표6-2> 방과후아카데미 조사표본 할당표

지역 구분	방과후아카데미				
	시설 수	초등4년생 전체	조사표본수	시설당 평균 조사대상 학생수	추출시설수 (집락)
서울	18	94	15	5	3
부산	11	100	15	9	2
대구	9	96	15	11	1
인천	6	0	0	0	0
광주	5	48	7	10	1
대전	5	15	2	3	1
울산	4	0	0	0	0
경기	38	234	36	6	6
강원	11	71	11	6	2
충북	9	131	20	15	1
충남	12	105	16	9	2
전북	16	76	12	5	2
전남	17	109	17	6	3
경북	11	43	7	4	2
경남	18	97	15	5	3
제주	8	68	11	9	1
합계	198	1,287	199		30

- 양육시설의 경우에도 동일한 요령으로 조사대상 시설 수를 산출함.

<표6-3> 양육시설 조사표본 할당표

지역 구분	양육시설				
	시설 수	초등4년생 전체	조사표본수	시설당 평균 조사대상 학생수	추출시설수 (집략)
서울	38	203	39	5	7
부산	22	78	15	4	4
대구	20	39	7	2	4
인천	13	33	6	3	2
광주	10	28	5	3	2
대전	13	32	6	2	2
울산	1	7	1	7	0
경기	30	127	24	4	6
강원	10	18	3	2	2
충북	10	39	7	4	2
충남	14	50	10	4	3
전북	15	45	9	3	3
전남	22	56	11	3	4
경북	13	38	7	3	2
경남	23	54	10	2	4
제주	4	14	3	4	1
합계	258	861	163		48

- 조사대상 시설 추출방식의 경우, 난수생성한 후 리스트 채정렬을 통해 무작위성을 담보함.

2. 향후 추진일정

1) 추진일정 개요

월	주	주단위 세부 계획
6월	D-4주	설문확정 CAPI 등재 프로그램 검토 표본설계 확정
	D-3주	면접원 선별, 조사용 노트북 발주
	D-2주	조사용 개별 노트북에 설문 프로그램 등재
	D-1주	면접원 교육 및 본조사 컨택 개시
7월	D-0주	실사진행
	D+1주	실사진행
	D+2주	실사진행
	D+3주	실사진행
8월	D+4주	실사진행
	D+5주	실사진행 자료처리(코딩)
	D+6주	실사마감 자료처리(코딩)
	D+7주	통계분석
9월	D+8주	통계분석
	D+9주	보고서작성
	D+10주	초안검수 및 내용수정
	D+11주	최종 보고서 제출 / 관리작업 개시

* 당초 계약일은 7월 31일 까지이나, 초등학교 4학년생을 조사대상으로 확정함에 따라 시설 서비스 경험기간을 충분히 두기 위해 실사일정을 연장함. 이에 따른 계약 연장에 관한 행정적 사항은 NYPI와 협의중임.

2) 설문획정 및 시스템 등재

- 설문의 난이도 조정, 설문 의도 모호성 배제, 결과물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설문의 최종획정
- 확정된 설문의 시스템 등재
- 논리 오류 검토한 후 최종 설문지를 시스템에 등재
- 조사용 노트북 확보(예비 포함 50대 확보)
- 각각의 조사용 노트북에 최종 설문지를 다운로드

3) 면접원 교육 및 본조사 컨택 개시

- 면접원 선발 기준
 - 전년도 예비조사 투입여부와 CAPI 운용 조사 경험 여부를 고려하여 선발
 - 1일 평균 3샘플 소화를 기준으로 20명의 면접원을 투입함.
- 면접원 교육
 - 1일 : 세부 조사요령 및 CATI 운용교육
 - 2일 : 아동 특성을 고려한 조사요령 교육
 - 중간지점(대전) 집체교육이나 지사별 순회교육으로 진행
- 본조사 컨택개시
 - 조사상기, 시설별 조사 협조 담당자 확인, 조사일정 확인 목적으로 진행
 - 본사에서 전담하며, 전화조사 전문면접원 40명 투입 진행